



2008. 7.

# 지방재정 관련법령 모음집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발간에 즈음하여

최근 자치단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합리적 재정구조의 구축과 효율적 재정운용은 성공적인 자치경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으나, 인구고령화 및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복지비 및 SOC 투자부담의 증가와 동시에,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이 초래한 세수감소 등 제반 재정압박요인으로 인하여 경기도의 재정은 급격한 변동의 중심축에 서 있습니다.

이에 재정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를 모아 법령집을 발간하여 법령연찬을 통한 정확한 업무수행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경기도 재정구조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안정적인 재정기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경기도 건설과 도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8. 7.

경기도 재정담당관

# 목 차

## 지 방 자 치

- 지방자치법 ..... 2
- 지방자치법 시행령 ..... 47

## 지 방 재 정

- 지방재정법 ..... 75
- 지방재정법 시행령 ..... 94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131
-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135
-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138
-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140
-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 143
- 경기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 147
- 경기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시행규칙 ..... 149
- 경기도 채무회계규칙 ..... 150

## 기 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18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189
-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193
-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198

## 공 기 업

- 지방공기업법 ..... 20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228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253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260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시행규칙 ..... 266
-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조례 ..... 268
- 경기도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270
-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 271
- 경기도 산하단체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칙 ..... 291

## 기 타 재 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296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315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330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 346

## 민 간 투 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356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399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 420

# 지방자치

# ◆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1장 총강(총강)

###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직할)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면·동을 둘 수 있다.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⑥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행정동)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 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면 중 1개 면
- ④ 시·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공유재산관리)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소유지)·보(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화재예방과 소방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 외교, 국방, 사법(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제2장 주민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계산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따른다.

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연서)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

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결과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3. 제16조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2.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3. 게을리 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 ③ 제2항 제1호의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
  4. 제1항 제4호의 경우 :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
- ⑤ 제2항 각 호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⑥ 소송의 계속(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⑦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수계)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 ⑧ 법원은 제6항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면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를 중단한 사유와 소송절차 수계방법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적힌 주소로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을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 ⑨ 제2항에 따른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 ⑩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침해 받을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 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직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2항 제4호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로 본다.

⑫ 제11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⑬ 국가, 상급 지방자치단체 및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과 제10항에 따라 소송 고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⑭ 제2항에 따른 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은 허가하기 전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알린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위 통지에 관하여는 제8항 후단을 준용한다.

⑮ 제2항에 따른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소정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6>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사용된 여비, 그 밖에 실제로 든 비용을 보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청구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7> 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18조(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7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 의장이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19조(변상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변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환부)하고, 재의(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⑧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장 선거

**제29조(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5장 지방의회

### 제1절 조직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제31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 제2절 지방의회의원

**제32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 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염연초생산협동조합·

인상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②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권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절 소집과 회기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시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시·도에서는 집회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2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53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 제6절 위원회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회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7절 회의

**제63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산회)를 선포한다.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회의의 공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70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절 청원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피심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0조(자격상실의결)** ① 제79조제1항의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81조(궐원의 통지)** 지방의회 의원이 궐원(궐원)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10절 질서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84조(발언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연단)이나 단상(단상)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절 징계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절 사무기구와 직원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재임)은 3기에 한한다.

**제96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방송공사와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의료보험조합·염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 교원
  7.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 그 밖에 다른 법률이 검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97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제9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적힌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제9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을 상실할 때

**제10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관 권한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5조(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6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할 때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2절 보조기관

**제110조(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① 특별시와 광역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 :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정수 :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정수 : 1명으로 한다.

②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는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자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두는 시·도에서는 그 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나 부군수나 부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절 하부행정기관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제118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19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동은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 제5절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7장 재무

###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123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제2절 예산과 결산

**제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 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3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수입과 지출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143조(재산의 관리와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양여)·대여하거나 출자 수단 또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5절 보칙

**제145조(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70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3조(협의회)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 ①** 협의회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명칭
2. 협의회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조정)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7조(협의회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2.29>

-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부칙 <제8423호, 2007.5.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소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소송은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27일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당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법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행정기구)는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제70조(의원의 퇴직)"을 "제78조(의원의 퇴직)"으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⑦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⑧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⑩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

제47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1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7조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한다.

제95조제1항 전단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2조"로 한다.

제17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234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8"을 "「지방자치법」 제2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한다.

⑭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4조"로 한다.

⑮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85조"를 "제9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04조"를 "제113조"로 한다.

<17>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으로 한다.

<18>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20> 지방분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2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 중 "제149조제1항"을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3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25>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26>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한다.

<2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차목 중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이라 한다.

<26>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9> 까지 생략

<23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49조제5항, 제15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제171조 전단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폐치·분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의 예산조치)** ① 법 제4조에 따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과 지출은 새로 성립될 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폐치·분합으로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①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써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자가 이를 결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은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는 시(「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일 것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채}) \div \text{일반회계예산}\} \times 100$$
- ③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읍으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치구 사무의 특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5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연서(연서)대상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3조(서명 요청 절차)** ①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 연월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나 그 사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중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 제14조(서명 및 청구인명부의 작성)** ①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②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취소하려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 ③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 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 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8조(지방의회에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19조 (주무부장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에 못 미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감사 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감사결과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부처 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감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공표 방법 등)**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26조(감사청구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나.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라.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 마.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2. 주민 감사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3.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⑥ 심의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장은 심의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과 감사청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 소속인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 소속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청구서 등의 서식)** 제12조에 따른 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제13조에 따른 위임 신고서 및 신고증, 제14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16조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제20조에 따른 대표자증명서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장 조례와 규칙

-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 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전문)을 붙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31조(공포일)** 제30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32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장 지방의회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 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 차기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양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제38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① 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4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 제40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나 조사를 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같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 줄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45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지방의회위원의 감사나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47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공개 원칙)**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시·도의회가 감사를 한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대리 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5조(불신임 의결의 통고 등)** 지방의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통고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통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면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 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77조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친다.

**제62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7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피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지방의회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사무직원의 경우)** 법 제90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업무를 겸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집행기관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의 보고)** ① 법 제9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임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사무인계)** ① 법 제10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그 소관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7조(사무인계서)** 제66조에 따른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이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서류 및 장부의 목록
2. 공유재산·물품·채권·채무등 재산의 목록
3. 예산·회계의 수지현계표(수지현계표) 및 잔고증명
4. 기획 중 또는 시행 중인 중요 사업
5. 그 밖의 주요 사항

**제68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인계서의 훑결 여부를 확인하여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6조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6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 인계를 하는 경우

**제69조(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7조 각 호의 사항 중 인계 당시 갖추어 두고 있는 목록 또는 대장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로써 사무인계서의 해당부분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뜻을 사무인계서에 적어야 한다.

**제7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재의)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72조(선결처분)** ① 법 제109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3조(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광역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명)으로 한다.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이하 "정무부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라 한다)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는 해당 시·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를 2명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이를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로 하고, 그 사무분장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시·군과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15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와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지방 부이사관
3.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 지방 이사관

⑦ 제6항을 적용할 때에 인구는 해당 시·군이나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인구 변동에 따른 직급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매 해 말 인구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상향조정한다.
2. 전년도 각 분기 말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인구 기준에 2년간 연속하여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그 직급을 하향조정한다.
3.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되는 경우 신설된 시·군 또는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의 직급은 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신설된 날 현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74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단체장"이라 한다)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1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75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5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학과 전문대학 등을 설치·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제77조(사업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소를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1.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2.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제78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연·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재무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1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의결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48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49조제5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제89조(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90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1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2조 (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4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87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준용한다.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5조(행정협의회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

## 제7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6조와 제167조에 따른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4명
-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 절차)**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6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7조(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앞서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법제처차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된다. <개정 2008.2.29>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8조(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본부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제10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준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87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1조(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제112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7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제1호와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집행(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법 제170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7조와 제17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감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법 제107조제3항 및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3.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116조(판결 등의 공시)** 제114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보·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 제8장 대도시 행정의 특례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시세)중 취득세와 등록세로 하며,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부칙 <제20306호, 2007.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⑦ 지역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2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27조, 제28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101조 및 제10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 제57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제99조제3항·제6항,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10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3조,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건설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10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104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97> 부터 <105> 까지 생략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종류별사무[제8조관련]

별표2 자치구에서처리하지아니하고특별시·광역시에서처리하는사무[제9조관련]

별표3 인구50만이상도시가직접처리할수있는도의사무[제10조관련]

별표4 지방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범위[제33조관련]

별표5 지방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범위[제33조관련]

별표6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지급범위[제33조관련]

별표7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의사무분장표  
[제73조 제5항관련]

# 지방재정

#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 제도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효율적인 예산편성·관리기법 및 지방재정운용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무관리방안
4.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5.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보급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지원방안
7. 그 밖에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조(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폐쇄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08.2.29>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2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중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제484조·제485조 및 제4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본다.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①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를 위하여 수입 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9조(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장 경비의 부담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자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 <개정 2007.1.3>)**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제30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①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 안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 내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한도 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 그 밖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소요경비를 수탁 기관에 납부하고 수탁기관은 공사집행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정산 환급하여야 한다.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장 예산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제35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영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 연도별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예산의 과목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항 및 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계속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6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이체)할 수 있다.

**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제4장 결산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1. 세입

- 가. 세입예산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 2. 세출

- 가. 세출예산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예비비사용액
- 라. 전용 등 증감액
-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결산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 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5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결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지방재정분석 또는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결과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포함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정보(이하 "통합재정정보"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분석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수입

**제61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하는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수납기관)** ①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4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리)**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 제7장 지출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69조(지출의 절차)**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0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이하 "일상경비"라 한다)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일상경비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용선료·여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도급경비)**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 그 밖에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경비 소속 회계연도의 각 항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80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을 적용한다.

**제81조(공금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 제9장 시효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4조(납입고지의 효력)**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제10장 채권과 채무

**제85조(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채무관리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과소로 인하여 동일인이 당해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채권 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관리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의 범위,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채권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장 복권

**제88조(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2.29>

##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제89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9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 및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임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당해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법령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9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장 보칙

**제96조(장부의 비치와 보고 등)**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7663호,2005.8.4>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 ③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8174호,2007.1.3>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26>및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0> 까지 생략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입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수시수입으로서 계약에 의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3조(세출의 회계연도소속 구분)** 세출의 회계연도소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2.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3.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4. 실비보상·급여·여비·수수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5. 사용료·보관료·전기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
6. 공사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지급명령을 발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4조(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의 납입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까지로 한다.

**제5조(출납사무의 완결)**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지방채증권 발행의 특례)** 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지방채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에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환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채의 발행대상)**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라도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미만일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발행액을 제외한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액
4.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라 정한 지방채발행 한도액 외에 지방채발행 추가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6.28,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축소·조정하거나 지방채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제11조(지방채발행의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다음 연도에 법 제11조제2항 단서·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회계연도 중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지방채인수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연도에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등과 협의하여 10월 31일까지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군 및 자치구가 다음 연도에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지방채발행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모집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모집의 방법으로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채증권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3. 지방채증권의 발행목적
  4.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
  5. 지방채증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6. 지방채증권의 이율
  7. 지방채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8.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
  9.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할 때에는 그 뜻
  10.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11.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12.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13. 지방채증권의 청약기한
- ② 지방채증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지방채증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지방채증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지방채증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4조(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1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채증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스스로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납입)**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지방채증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7조(증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제19조(지방채증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방채증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0조(기명식·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③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상환기일·추첨일시·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이권 흡결의 경우)** ① 이권 있는 무기명의 지방채증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 중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흡결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흡결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외화지방채증권의 특례)** 외국에서 외국통화로써 표시되는 지방채증권(이하 "외화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 외화지방채증권의 기명식과 무기명식간의 전환, 외화 지방채증권에 관한 장부, 외화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이권에 흡결이 있는 외화지방채증권의 상환 및 이권의 소지인에 대한 지급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재지의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제26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 채무자명 및 상환액 등을 기재한 채무 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담은 서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주채무의 범위와 채권자·채무자가 준수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의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제28조(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제31조(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②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장 경비의 부담

**제32조(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용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4조(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계획을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의2(지방비부담심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비부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
2. 시·도지사로 구성되는 전국단위 협의회 의 회장이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2인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구성되는 전국단위 협의회 의 회장이 추천하는 시·군 및 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 2인
4. 지방재정 관련 민간 전문가 2인

③ 심의회 의 위원장은 심의회 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 안건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회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5]

**제36조(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의 종류는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일반재정보전금 총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특별재정보전금을 공제한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배분하고,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시·군의 광역시세·도세 징수실적에 따라 배분하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 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가 1 미만인 시·군을 대상으로 1에서 당해 시·군의 재정력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당해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인구가 20만 미만인 시·군의 재정결함금액의 70퍼센트를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④ 일반재정보전금·시책추진보전금 및 특별재정보전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시·군·자치구의 부담경비의 정산)** 시·도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시·군·자치구가 부담하는 경비의 집행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자치구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38조(기준부담률에 대한 의견제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기준부담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장 예산

**제39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년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공시설 손실부담
2.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3.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4.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특별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
    -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 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외국차 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과 다른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투·융자하는 사업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비(소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시민회관·구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타당성 조사실적,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조사항목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43조(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는 투자심사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4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투자심사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5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2.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명시이월비 설명서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9.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 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① 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세외 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31>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 채무의 상환연도 및 상환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예산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 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출절약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출절약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해당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보조기관등"이라 한다)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2조(사후 예산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당해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등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기관 등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제56조(예산배정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 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제5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예산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이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월한도는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 5로 한다.

## 제4장 결산

**제59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제62조(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재무보고서에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및 필수보충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제64조(재정운용에 관한 보고)** ①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재정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124조제2항의 예산보고서

2.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
  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
  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
  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
  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
  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8.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
  10. 법 제53조의 재무보고서
  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
  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 ② 재정보고서의 서식·보고기한 그 밖에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6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이하 "재정분석·진단"이라 한다)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재정분석·진단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 잔액이 과다한 경우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총당·사용한 경우
3. 인건비 등 경상비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의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이행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거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방재정·세제·회계 등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지방재정분석·진단의 시행을 위한 전문기관 의뢰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따른 재정진단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분석·진단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이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재정분석·진단 및 지방재정건전화계획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7조(통합재정정보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제출한 통합재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1회 이상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총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장 수입

**제73조(세입조사결정)** ① 징수관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반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영수보고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4조(납입의 고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말로써 이를 할 수 있다.

**제75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그 밖의 세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수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6조(수납금의 납입)**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7조(금고에서의 수납)** 금고에서 세입금을 수납하거나 세입금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징수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그 밖의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소인)하고 따로 세입징수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80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3인 이내인 관서에서는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의 직무를 서로 겸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 반납)**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반납함에 있어 그 지출된 금액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출된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목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변상금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2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지출원은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납자로 하여금 그 금액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83조(금고의 지출금 반납통지)** 금고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납내용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징수관은 매월 세입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장 지출

**제85조(예산의 재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위임 받은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6조(자금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 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87조(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의 확인)** 지출원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을 발하기 전에 그 경비의 지출이 배정된 예산의 금액과 지출한도액의 금액을 초과함이 없는지의 여부 및 소속 연도의 세출과목에 틀림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8조(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한을 경과한 지급명령의 소지자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상환여부를 결정하여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지급명령 기재사항)** ① 지급명령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성명·금액·지출과목·연도 및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에 "요대체"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법 제67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출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31]

**제90조(지급명령의 종류)** ① 지급명령은 통상지급명령·송금지급명령 및 집합지급명령의 3종으로 한다.

②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③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소에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④ 집합지급명령은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에 발한다.

**제90조의2(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하여 지출을 하는 때에는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 제77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31]

**제91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소재지의 행정구역 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그 밖의 직의 보수·수당·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14.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교부하는 경비

② 제1항 각 호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9호·제11호·제12호 및 제14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3호의 경우 각각 1천만원
2. 제1항제5호의 경우 2천만원

**제92조(자금교부의 제한)**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의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매 1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또는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2. 수시의 비용에 대하여는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93조(회계연도 개시전의 자금교부)**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제57조 각 호에 열거한 것에 한한다.

**제94조(일상경비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비특별회계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일상경비의 지급에 앞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제95조(임시일상경비출납원)** ① 일상경비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는 제94조 및 제10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6조(선금급)**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8.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도서·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9. 외국에서 연구 또는 조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10. 교통이 불편한 곳에 근무하는 자 또는 선박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11. 외국 원조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공사나 제조를 하게 할 때에 필요한 경비
12. 봉급지급일에 전출 또는 출장을 하거나 휴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1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14.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급으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급으로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써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97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98조(도급경비 지급관서의 범위)**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30>

1. 읍·면·동의 출장소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
4. 도시철도의 역과 도시철도 현업사무소
5. 화장장
6. 수원지관리사무소
7. 쓰레기소각장 및 쓰레기매립장
8.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9.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10. 119구조대
11. 그 밖에 정원 3인 이내의 관서

**제99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일반운영비
2. 여비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100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법 제7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직을 제외한 정원이 1인인 관서에 있어서는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보충적 경비)** 법 제7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3. 공무원 사망급여금
4. 공무원 공상급여금
5. 배상금과 보상금
6. 모든 반환금·결손보전금 및 상환금
7. 이자
8. 소송 및 등기비용
9.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위탁징수교부금
11. 체납 및 범칙처분비
12. 전염병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제세공과금
16. 관공영요금의 인상에 따르는 동 차액
17. 보험료

##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102조(금고업무의 약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융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이 정하는 금고로서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취급 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3조(금고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은행법」에 의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4조(세입세출 외 현금 등의 금고보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출납사무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따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취급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시켜야한다. 다만,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유가증권취급의 특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6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금고의 출납상황과 장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제9장 채권과 채무

**제107조(채권관리사무의 정의)** 법 제87조제1항에서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하여야 할 보전·추심·내용의 변경 및 소멸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한다.

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이 행하는 사무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3. 채무이행의 수령에 관한 사무
4.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제108조(채무관리사무의 범위)** 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2. 차입금
3. 채무부담행위
4. 보증채무부담행위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110조(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었음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있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를 말한다.
2.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제114조(이행기한의 단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11조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을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을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제116조(그 밖의 보전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 시키기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7조(담보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그 밖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보존하여야 한다.

**제119조(징수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20조(상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총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총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그 소관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이 있는 때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총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계 또는 총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1조(소멸에 관한보고)**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 또는 제1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①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24조(이행연기의 특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세 징수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이하 "이행연기의 특약"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2.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채무자가 재해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연체금(이행의 지체에 관한 손해배상금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제127조(집행권원의 취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당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 가.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에 대하여 은닉·손괴 그 밖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나. 거짓으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 다.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
  - 라. 제1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
  - 마. 채무자가 제1호의 조건 그 밖에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바. 채무자의 자력상태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제130조(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당초의 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에 대하여 연납이자(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 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 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연체금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한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그때 까지 붙은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3.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① 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

**제134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2.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이 지출의뢰한 자금에 대한 통합 계좌이체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출관을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5조(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취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결손보전금의 지출)** ①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망실한 세입·세출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당해연도 내에 회수할 가망이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손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결손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출원에게 결손보전금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37조(출납원의 망실보고)** 출납원과 그 대리인 또는 분임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물품관리관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4.5>

**제139조(출납원의 장부 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장 보칙

**제140조(징수부 등의 비치)**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경리관 및 지출원은 징수부·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비치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 및 물품출납부를 비치하고, 현금 및 물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1조(금고가 비치할 장부)** ①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의 출납 또는 유가증권의 수급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2. 지급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3.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에 관한 장부
4.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자금의 출납에 관한 장부
5. 유가증권의 수급에 관한 장부

② 금고는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2조(계산서의 제출)** ① 지출원은 소관세출금의 지출에 관하여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소관현금의 출납에 관하여 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금고는 출납에 관한 일계표·월계표 그 밖에 필요한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재무회계에 관한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수입·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그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작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8.2.29>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6.28, 2008.2.29>

**제145조(지방자치단체 규칙)** 이 영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5]

**부칙 <제19226호,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보고서에 관한 사항은 2007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부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독촉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독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채발행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9586호,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제4조 생략

**부칙 <제19735호,2006.11.23>**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5호,2007.4.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호,2007.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445호,2007.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설치기준인 인구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기구설치기준을 연속하여 2년간 미달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종전의 기구설치기준을 최초로 미달한 때부터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보다 그 기구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감축 운영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의 기구설치 기준을 최초로 감축운영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구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합치하도록 하되, 합치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때부터 1년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 부칙 <제20504호,2007.12.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은 "교육인적자원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4조,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의2제1항·제4항,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제2항, 제39조,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제1항·제4항7호·제5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제5항,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2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8> 부터 <105> 까지 생략

## ◆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

부령제47호 전문개정 1999. 04. 16.

행정자치부령 제130호 일부개정 2001. 04. 06.

행정자치부령 제3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14.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서 변경)

행정안전부령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4]  
[전문개정 2001.4.6]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전문개정 2001.4.6]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14,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자체심사
  - 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 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업비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2. 시·도의뢰심사
  - 가. 시·군·구의 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나. 2이상의 시·군·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다. 시·군·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3. 중앙의뢰심사
  - 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라.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 마.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절계 용역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상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3월 2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의 경우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서
4. 기타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자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자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자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자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6.]

1.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미만 늘어난 사업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01.4.6]
  - 가. 시·군·구 자체검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 나. 시·도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3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 다. 중앙의뢰심사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후 3년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신설 2001.4.6]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시·군·구에 있어서는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에 있어서는 12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4,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수립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 및 시·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3.14,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3.14]

**제9조의2(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를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 상황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상반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상반기 투자심사의뢰서는 제4조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부칙[200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6.3.14 제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3호·제2항2호,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8> 부터 <33> 까지 생략

## ◆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개정 2004.11.29.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 2006. 6.30. 조례 제3515호

개정 2008. 7. 3. 조례 제3757호(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등을 위하여 도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상의 잉여금중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의 3%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5, 2006.6.30>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도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① 기금은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회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3>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자금운용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하며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기금의 조성규모 및 연차별 적립계획·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고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8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8.7.3.>

2. 기금출납원 :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 <개정 1998.11.9, 2002.11.2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부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2·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370호,2004·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금고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 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에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를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③~⑭생략

#### 부칙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2008.7.3.>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19) 생략

## ◆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전문개정 2006.05.19. 조례 제3501호

개정 2006.09.19. 조례 제3556호(경기도 행정기구및정원조례)

개정 2007.02.22. 조례 제3587호(경기도 행정기구및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재원조달 대책 및 입지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 및 파급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의 범위 안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각각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 제2투자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관할별 투·융자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재정·건축·토목·환경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제1위원회 : 문화관광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국장 <개정 2006.9.19, 2007.2.22>
2. 제2위원회 : 경제농정국장·문화복지국장·도시환경국장·교통도로국장 <개정 2006.9.19, 2007.2.2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각 관할별 투·융자심사 업무담당 실·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및정원조례) <제3556호,2006·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1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⑨~(28) 생략

**부칙(행정기구및정원조례) <제3587호,2007·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투자진흥관.문화관광국장.환경국장.건설국장"을 "문화관광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경제농정국장.문화복지국장.환경관리국장.지역개발국장"을 "경제농정국장.문화복지국장.도시환경국장.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②~⑩생략

# ◆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6. 6. 26 규칙 제320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군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심사기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4.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 재정·경제적 효율성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심사

- 가. 시·군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 나. 도의 사업비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2. 도 의뢰심사

- 가. 시·군의 사업비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 나. 2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다. 시·군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3. 중앙 의뢰심사

- 가. 도 또는 시·군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나.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다. 외국의 자본이 도입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 라. 도 또는 시·군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 마.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국가경제 및 사회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심사제외 사업으로 정한 사업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시기는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실시 하여야 하며, 수시 심사의 경우에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도의 각 실·국장 및 시장·군수가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심사는 2월 말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당해 사업의 투자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⑤ 도의 각 사업소장이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항에서 규정한 심사요청 7일 전까지 해당 실·국장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심사의뢰서를 받은 해당 실·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4항의 심사요청기일까지 도지사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심사요청 및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 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자원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⑦ 도지사는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심사를 요청한 실·국장 및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선행절차 이행·추진시기·규모·재원조달계획 및 사업계획의 미비 등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 추진·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재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2.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시·군 자체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나. 도 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다. 중앙 의뢰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제7조(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시장·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지방재정관련 계획 수립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 도지사는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판정된 사업에 한하여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① 도지사는 투자심사를 실시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률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를 투자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당해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

개정 2006.06.30. 조례 제3516호

개정 2007.02.22. 조례 제3587호(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8.06.04. 조례 제3742호

개정 2008.07.03. 조례 제3757호(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08.6.4>

### 제2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①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4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30, 2008.6.4>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96.3.20, 2000.2.16, 2008.6.4, 2008.7.3.>

③ 위원은 경제투자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농정국장, 복지건강국장, 환경국장, 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의회 의원 및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개정 96.3.20, 98.9.14, 2001.11.1, 2006.9.19, 2008.6.4>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6.4>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08.6.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4>

**제5조(위원회 기능<개정 2008.6.4>)**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6.4>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6.4>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08.6.4>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08.6.4>

③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개정 2008.6.4>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08.6.4>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8.6.4>

② 간사는 재정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99.9.20, 2008.6.4>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6.4>

### 제3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신설 2006.6.30]

**제10조(구성)** ① 경기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신설 2006.6.30]<개정 2008.6.4>

② 위원은 대학교수·시민단체 대표 및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건강국장 및 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06.6.30] <개정 2007.2.22, 2008.6.4, 2008.7.3.>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06.6.30]<개정 2008.6.4>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신설 2006.6.30]<개정 2008.6.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6.6.30]<개정 2008.6.4>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30]<개정 2008.6.4>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신설 2006.6.30]

-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6.30]<개정 2008.6.4>
- ②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06.6.30]<개정 2008.6.4>
- ③ 정기회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시사유가 발생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6.6.30]<개정 2008.6.4>
- ④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신설 2006.6.30]<개정 2008.6.4>

**제15조(준용)** 위원회의 의견의 청취, 간사 및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6.6.30]<개정 2008.6.4>

#### 제4장 보칙 [신설 2006.6.30]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6.30]

##### 부칙 <199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1998.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199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0.2.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칙 <20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6.30>**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를폐지 한다.

**부칙(행정기구및정원조례) <제3556호,2006.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보건복지국장,건설교통국장"을 "복지건강국장,건설국장"으로 한다.

⑩~(28) 생략

**부칙(행정기구및정원조례) <제3587호,2007.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건강국장 및 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757호,2008.7.3.>**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19) 생략

## ◆ 경기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

개정 2006.6.30 제35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2006.6.30>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1·4·2>

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경기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시행규칙 ◆

개정 2006. 9.11 제32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보증채무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채무보증승인통지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채무보증발급신청서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보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보증채무현황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보증채무현황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

전문개정 2008.07.01. 규칙 제3321호

개정 2008.07.03. 규칙 제3329호(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1)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 소관을 말한다.
2. 실·과는 관서의 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도의 소속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도의 소속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관서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도의회사무처장과 제3호 및 제4호의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은 도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분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행정(1)부지사 소관
  - 가.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 나.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및 담당관
  - 다. 경리관 : 자치행정국장
  - 라.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과장 및 담당관(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 마.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 바.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 및 과장
- 사. 총괄채무관리관 : 재정담당관 <개정 2008.7.3.>
- 아. 채무관리관 : 소관 과장 및 담당관
-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8.7.3.>
- 차.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 카.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사무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사무관
- 타.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
- 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2. 본청 행정(2)부지사 소관

- 가. 징수관 : 기획행정실장
- 나. 분임징수관 : 행정관리담당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및 담당관
- 다. 경리관 : 기획행정실장
- 라. 분임경리관 : 행정관리담당관, 각 과장 및 담당관(일반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한다)
- 마. 채권관리관 :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과장 및 담당관
- 바. 채무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과장 및 담당관
-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 아. 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담당사무관
-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
-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3. 경기도의회

- 가. 징수관 : 사무처장
- 나. 경리관 : 사무처장
- 다. 분임경리관 : 총무담당관(각 담당관, 전문위원은 일상경비에 한한다)
- 라.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 마. 채무관리관 : 사무처장
- 바.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 사. 수입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사무관
- 아.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사무관(본청 일상경비에 한한다), 의사업무담당사무관, 전문위원실의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주사
-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4. 제1관서

- 가. 징수관 : 소방재난본부장, 관서의 장
-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 다. 경리관 : 소방재난본부장, 관서의 장
- 라. 분임경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바.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회계업무담당주사(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의 경리업무담당)
-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사무관, 주사 또는 주사보(소방관서는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또는 소방장)
-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소방관서는 소방경, 소방위 또는 소방장)
- 차.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의 서무업무담당사무관, 연구관, 지도관 또는 서무업무담당 주사, 연구사, 지도사(소방관서는 소방령, 소방경 또는 소방위)
- 카.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수입대체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소방령

#### 4. 기타관서

-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라.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보
- 바.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업무 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보
-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주사, 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보

#### 5. 시·군

- 가. 징수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재무업무담당국장), 부군수
- 나. 분임징수관 : 읍장, 면장,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
- 다. 경리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재무업무담당국장), 부군수(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 라. 채권관리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재무업무담당국장), 부군수
- 마. 지출원 : 회계업무담당과장(본청 재배정예산의 경우에 한한다)
- 바.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업무담당과장
- 사. 수입금출납원 : 세무담당과장
- 아. 분임수입금출납원 : 읍·면의 재무업무담당주사,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세무업무담당 과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도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도의회 의장이 요구한 경우로 제한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잉여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 호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에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하고, 제1관서의 분임 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와 인수인계일자 및 성명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2장 예산

### 제1절 예산편성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조정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과장·담당관(이하 "과장"이라 한다)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의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제1-1호서식) 2통을 작성하여 소속 실·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정과장과 자치행정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내용
8. 그 밖에 예산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의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7.3.>

② 투자심사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 자료제출 시까지 해당 실·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7.3.>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담당관, 기획행정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사무처장, 주관 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정과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7.3.>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도지사의 사정이 끝난 때에는 예산담당관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의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예산안의 결정알림 및 설명서 작성)**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안이 결정된 때에는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예에 의하여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1-1호서식)를 제9조의 예에 의하여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국장과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별지 제11-1호서식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받아 이를 본청 실·국장, 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알림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알림을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바로잡아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과장과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같이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예산의 알림)**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이 의결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개정 2008.7.3.>

## 제2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 및 자금배정계획)** ① 본청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알림을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본청 실·과, 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과장,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투자심사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따라 쓴다.

**제19조(예산배정 및 알림)**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조정실장이 행한다. <개정 2008.7.3.>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과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 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③ 본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도의회사무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와 시·군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 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3.>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1관서의 장 및 시·군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에게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3.>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예산담당관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주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행정(1)부지사 및 행정(2)부지사와 그 소속의 국장·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 : 추정금액이 3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1건당 4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국장 :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2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과 5천만원이하의 조달물자의 구매(다만, 임시일상 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과장에게 각각 전결집행 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장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제조·용역,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과장 :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한도에 따라 자치행정국장 또는 기획행정실장,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도의회사무처·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7.3.>

1.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지원계획의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도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도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 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 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경우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알림을 받은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정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본청 주관과장, 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집행상황의 조사)**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거두어 합쳐 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본청 해당과장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알려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 본청 실·국장, 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19-2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②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한 경우에는 주관 실·국장, 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3.>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국장,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②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때에는 예비비 지출을 요구한 본청의 실·국장, 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3.>

## 제3장 결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작성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도지사는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복식부기회계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도지사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설명자료 제출)**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수입

**제33조(징수결정 알림)**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또는 제22호의1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알린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 처분(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21-6호서식)을 한 때에는 제33조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 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 연도 출납폐쇄기한 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제37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그 밖에 용도의 서식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따른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보조금, 그 밖의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유가증권에 따른 수입)** 영 제78조에 따라 현금을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09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 및 제29-1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잘못된 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에 따른 세출과목으로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잘못 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한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따라 쓴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해당 수입금 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붙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호(지방세법규의 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경기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장 지출

### 제1절 총칙

**제4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과장은 본청 각 실·과 및 각 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세정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과장,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관이 알리는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자금배정)** ① 세정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 요구서 및 제49조제2항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도금고 및 도금고지출 대행점과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정과장이 본청 실·과장,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알리고자 할 때에는 도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 지출한도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특성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라 쓴다.

**제5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 세정과장은 세출예산 지출한도액을 알린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받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따라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 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의 발행은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 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약식지급명령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바꾸어 쓸 수 없다.

**제54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에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5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 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도금고 또는 도금고 지출대행점에 알려야 한다.

**제56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붙여야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7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 내지 제51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경우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서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58조(송금알림)**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제53조제2항의 약식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 시 채주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3호서식)로 알려야 한다.

**제59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서(별지 제54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금고, 도금고지출대행정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정의 지급미필증명을 붙여야 한다.

**제60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이 지나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본청의 각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따라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하여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62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61조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알리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제63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에 따르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자치행정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의 최초 품의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 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4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또는 제60-1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5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도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서 시행한다. 이 경우에 제54조에 따라 쓴다. 다만,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6조(개산금의 정산)** ① 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사무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금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직무수행경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7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에 따른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68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을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2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09호서식에 따라 승인을 하고, 그 승인내역을 세정과장과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7.3.>

③ 세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50조의 예에 따른다.

**제73조(예산의 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72조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수입 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에 따라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을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세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절 대체수지

**제74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 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 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도와 도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 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특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6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5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7조(자금운용)** ① 도지사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자금의 관리는 세정과장이 주관한다.

####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도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④ 도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은 즉시 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79조에 따라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5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호의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붙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같음한다.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적고 이월하여야 한다.

**제81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지체 없이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알림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82조(위탁금의 취급)** ① 경기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에 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금은 해당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지체 없이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준용규정)** 제81조는 지체 없이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따라 쓴다.

**제84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5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6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심사한 후에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7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81조에 따라 쓴다.

**제8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처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절 출납원

**제89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소재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1조(개인현금의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섞어 취급하지 못한다.

**제9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 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3조(검사의 입회)** 제92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감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4조(검사서)** ① 감사원은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는 감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95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경행)** 감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96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정과장,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7조(변상조치)** ① 도지사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린 사실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98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9조(인계의 절차)** ① 제98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 잔액증명을 붙인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마침”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0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경우에는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예에 따라 인계한다.

## 제6절 금고

**제102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에 따른 도의 금고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도금고, 도금고수납대행점, 도금고지출대행점
  2. 도금고 : 도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도금고수납대행점과 도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도금고수납대행점 : 도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도금고지출대행점 : 행정(2)부지사 소관 또는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 도공금지급대행점 : 도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② 영 제103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 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03조(금고약정의 방법)**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도금고는 도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할 것
2. 도금고수납대행점은 도, 도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할 것
3. 도금고지출대행점은 도, 도금고, 행정(2)부지사 또는 제1관서와 해당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할 것
4. 도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 할 것

**제104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도의 근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수급연도별

**제106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 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제107조(장부의 비치)** ① 도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도금고지출대행점과 도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③ 도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8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도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9조(수납절차)** ① 도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 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속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 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10조(과오납금의 지급)**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1조(지급절차)** ①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명령)** 도금고는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명령서 (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3조(송금지급절차)**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이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따라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4조(집합지급명령)**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이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경우는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 처리는 제113조에 따른다.

**제115조(지급의 거부)** ①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
4. 집합지급명령과 집합지급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경우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② 도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경우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경우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경우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경우

**제116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서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 연도 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7조(세출금의 반납)**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8조(정리사항의 정정)**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그 밖에 정정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9조(세입세출일계표)** 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세입세출월계표)** ① 도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대체수지의 처리)** 도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3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정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계약

**제124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 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 서식부터 별지 제49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25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상거래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제126조(계약실적보고)** ① 행정관리담당관과 각 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 상황(별지 제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자치행정국장에게 제출하고 자치행정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 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장 계산증명

**제12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과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바로잡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오른쪽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바로잡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바로잡거나, 끼워 넣거나 또는 지웠을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그 옆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30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私印)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 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31조(외국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自署)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32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3조(과목경정 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공동서명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관서의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붙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규정된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34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 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금고 또는 도금고지출대행점이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청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 잔액증명서를 붙여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모두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고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이를 각각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8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0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 실·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4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3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따라 쓴다.

## 제8장 장부

**제144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5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6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영 제108조에 따른 도의 채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7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9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같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8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9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 ② 제148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제150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2종류 중 1종류의 장부만을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52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정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5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도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손실·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56조(채권관리부의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45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한 채권

**제157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9조(채권의 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 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6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 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장 보칙

**제161조(재정사항의 공표)** 도지사가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도보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따른다.

**제162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관직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다른 조례 및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제164조(공기업회계규칙)**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5조(그 밖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제3329호,2008.7.3.>

제1조 부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16) 생략

(17)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 및 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중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제10조제1항 중 “투자심사담당관”을 각각 “재정담당관”으로 한다.

(18) 생략

기 금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 2007.5.11>

**제3조(기금의 설치제한)** ①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운영)** ①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 조합은 협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협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기금의 용도)** 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7.5.11>

1.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地方債)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預置金)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19조(협력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기금은 그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협력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제20조(협력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협력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협력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은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부칙 <제7664호, 2005.8.4>**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 2007.5.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7> 까지 생략

<2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 가. 수입계획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2. 지출
  - 가. 지출계획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지출계획현액
  - 라. 지출액
  - 마. 다음 연도 이월액
  -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 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지역발전협력기금의 재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자금(이하 "협력기금예치금"이라 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 발행수입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5. 그 밖에 협력기금의 운용수익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전문기관)**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 조합이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협력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협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협력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협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할 수 있으며, 용자를 받은 자는 용자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이 용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용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협력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 협력기금예치금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협력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협력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협력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협력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9197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부터 <105> 까지 생략

◆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2004.11.29. 조례 제3370호]

[개정 2008.03.17. 조례 제3725호]

[개정 2008.06.04. 조례 제3740호]

[개정 2008.07.03. 조례 제3757호(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용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란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 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8.3.17>
2. "도 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08.3.17>
3. "기금운용관"이란 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개정 2008.3.17>

**제3조(기금의 조성)** 경기도통합관리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3.17>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08.3.17>

1.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2.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도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5.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등

**제5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경기도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8.3.17>

**제6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3.17>

② 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3.17>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3.17>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4. 그밖의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3.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17, 2008.7.3.>

1.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
2. 그밖에 기금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3.17>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3.17>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3.17>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담당실·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8.3.17, 2008.6.4>

③ 도지사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7>

**제9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기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8.3.17>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08.7.3.>
2. 분임기금운용관 : 통합관리기금담당실·과장 또는 담당관<개정 2008.6.4>
3.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관리담당사무관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 관리)** ① 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을 비치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8.3.17>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8.3.17>

③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3.17>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매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3.17>

②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7>

**제12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개정 2008.3.17>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3.1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7>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금고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에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를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②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금고에 예치·관리"를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③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도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를 "도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④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를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금고에 이자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⑤ 경기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도지사가 협약에 의하여 지정한 금융에 예치하여 관리·운용"을 "도지사가 협약에 의하여 지정한 금융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금융기관에의 예치"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⑦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금융기관에의 예치"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⑧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도지사가 관리·운용"을 "도지사가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⑨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금고에 예치·관리"를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⑩ 경기도체육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⑪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⑫ 경기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⑬ 경기도청소년육성및장학금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도금고의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⑭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를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으로 한다.

부칙 <200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2008.7.3.>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지방채 상황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19) 생략

## ◆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4.12.27 규칙 제3132호]

[개정 2006. 7.10 규칙 제3208호]

[개정 2008. 4.28 규칙 제3309호(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28>

**제2조(용자기간)**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용자하는 경우의 용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8.4.28>

② 도지사는 용자를 받은 기관(이하"용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용자기간 만료일 까지 용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제3조(용자약정 등)** ① 용자를 할 때에 도지사는 용자기관의 장과 용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② 제1항에 의한 용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용자약정서에 의한다.<개정 2008.4.28>

③ 용자기관의 장이 용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제4조(용자금의 이자)** 용자금의 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용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3조에서 정한 용자약정에 따른다.<개정 2008.4.28>

② 용자기관이 용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4.28>

③ 용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4.28>

④ 용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개정 2008.4.28>

**제6조(예탁증서)**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9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도지사는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수익금 중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4.28>

**제10조(기금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08.4.28>

1. 경제투자관리실장 및 복지건강국장 <개정 2006.7.10, 2008.4.28>
2.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금융이나 회계분야 등 기금에 관한 전문가 <개정 2008.4.28>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4.28>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8.4.28>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4.28>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1. 임기 중에 사망한 때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도지사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조례 제9조에서 정한 통합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의 직무와 책무는 각각 「지방재정법」에서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4.28>

1. 통합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 : 경리관·징수관

2. 기금출납원 : 지출원·출납원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8.4.28>

**제14조(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4.28>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6.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8.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기 업

# ◆ 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전문개정 1980.1.4]

**제4조(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법령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규칙 기타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80.1.4>]

## 제2장 지방직영기업

### 제1절 통칙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1980.1.4>]

**제6조(지방자치법등의 적용)**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기타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1992.12.8>

### 제2절 조직

**제7조(관리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20이상의 사업에 걸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0.1.4, 1992.12.8>

②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제8조(관리자의 권한)**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7.5.11>

1.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2. 결산을 의회의 승인에 붙이는 사항

3.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과하는 사항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0.1.4, 1992.12.8>

1.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3.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사항
4.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취득·관리·처분하는 사항
5.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
6.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
7.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을 하는 사항 및 기타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8.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9. 증빙서 및 공문서류를 보관하는 사항
10. 지방직영기업의 조직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휘·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 지방직영기업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기업직원)** 지방직영기업운영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제11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12조(권한의 위임등)** ① 관리자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1992·12·8>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12·8>

### 제3절 재무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

**제14조(독립재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1992·12·8>

1. 경비의 성질상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2·12·8>

**제15조(사업연도)**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1992·12·8>

**제16조(계리의 원칙)**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② 지방직영기업에 있어서 회계거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1992·12·8>

③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부채 및 자본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개정 1992·12·8, 1999.1.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9.1.29>

⑤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제17조(출자 등<개정 2002.3.25>)**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  
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80.1.4, 1992.12.8>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제18조(장기대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부한 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제19조(지방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2.12.8, 1996.12.30, 2004.12.3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제20조(일시차입금)** ① 관리자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제20조의2(선수금)** 지방직영기업은 당해 기업이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제21조(원가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추진·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능별급부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2.1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②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은 연도중의 기업의 재정집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의 매사업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의 예산과 구분하여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작성하여 전년도 7월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4.12.30, 2008.2.29>

**제24조(예산의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그 사업의 운영계획과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그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당해연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및 그에 관련되는 자금의 운영계획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개정 1992.12.8>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2.1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27조(수입금마련 지출)**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관리자는 당해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28조(예산의 집행)** ① 관리자는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구매, 공사의 도급등 자금의 지출에 직접 관련되는 지출은 당해연도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자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통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제29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 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를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2.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삭제 <2002.3.25>

③ 삭제 <2002.3.25>

④ 관리자는 계속비의 연도별소요경비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 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2·12·8, 2002.3.25>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지출의 특례)** ① 관리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0·1·4>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식증대를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9.1.29>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④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지방직영기업소관의 현금출납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제34조(회계의 통할)** ①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2·12·8>

②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2·12·8>

③ 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개정 1980·1·4, 1992·12·8>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0·1·4, 1991·5·31, 1992·12·8, 1999.1.29>

**제36조(계리상황의 보고)** 관리자는 매월말일 현재로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와 당해 기업의 계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제37조(잉여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잔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잔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잔액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의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29>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마다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 처분할 수 없다.

<개정 1980·1·4>

**제38조(결손의 처리)**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그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월한다.<개정 1992·12·8>

**제39조(회전기금)** ① 지방직영기업은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전기금은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한다.<개정 1980·1·4, 1992·12·8>

③ 제1항의 회전기금은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한다.

**제40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9, 2007.5.11>

[전문개정 1992·12·8]

**제41조(기업자산관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과 당해 기업이 보유하는 채권·유가증권 및 현금은 이를 기업자산으로 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2·12·8>

**제42조(계약)** 관리자는 매매·대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43조(대통령령에의 위임)** 이 절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4, 1992·12·8>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조합에관한특례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 삭제 <1992·12·8>

③ 삭제 <1992·12·8>

④ 삭제 <1992·12·8>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두지 아니하며 관리자의 권한은 당해 조합장이 행한다.<개정 1992·12·8>

② 조합장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되, 그 자격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2·12·8>

#### 제5절 보칙

**제46조(업무상황공표)** ① 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②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③ 삭제 <2002.3.25>

**제47조(사업조정)** ①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개정 1991·5·31, 1992·12·8, 1999.1.29, 2002.3.25,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991·5·31, 1999.1.29, 2008.2.29>

**제48조(변상책임)** ①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가 세입의 징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 물품의 관리 및 지출의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2.3.25>

### 제3장 지방공사

#### 제1절 설립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2.12.8>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③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4]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공사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설립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공동처리 사항, 의결기관대표자의 선임방법, 출자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52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본조신설 1980.1.4]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1992.12.8>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2002.3.25>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0]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2·12·8, 1999.1.29>

[본조신설 1980·1·4]

**제5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 제2절 임원 및 직원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개정 2006.10.4>)**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1.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99.1.29, 2006.10.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종료에도 불구하고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1.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3.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9.1.29, 2002.3.25, 2006.10.4>  
⑦ 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2006.10.4>  
[본조신설 1980·1·4]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는 임기 중 사장이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권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0.4]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②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본조신설 1980.1.4]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3.25]

**제61조(임·직원의 겸직제한<개정 2002.3.25>)**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2.3.25>

[본조신설 1980.1.4]

**제62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2.3.25>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3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5]

### 제3절 재무회계

**제6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64조의2(회계원칙 등<개정 2002.3.25>)**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9.1.29>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7.5.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2006.10.4, 2008.2.29>

[본조신설 1992.12.8]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65조의2(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2.12.8]

**제6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3.25>

②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2.12.8, 1999.1.29>

③ 삭제 <1992.12.8>

[본조신설 1980.1.4]

**제66조의2(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개정 2004.12.3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예산 및 결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4.12.30, 2008.2.29>

② 공사의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공통기준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0>

[본조신설 1992.12.8]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적립한 후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전문개정 1992.12.8]

**제68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2004.12.30>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으로 본다. <신설 2007.5.17>  
[본조신설 1980.1.4]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2.3.25>

1. 국채·지방채의 취득
  2.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의 예입
- [본조신설 1980·1·4]

**제70조 삭제 <1996·12·30>**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71조의2(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제71조의3(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제71조의4(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72조(선수금)** 공사의 재산분양·시설이용 및 용역제공에 대한 선수금에 관하여는 제2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2·12·8]

## 제4절 감독

**제73조(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4]

**제74조(보고 및 검사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8.2.29>

[본조신설 1980.1.4]

## 제5절 보칙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9>

[본조신설 1980.1.4]

### 제75조의1

[중전 제75조의1은 제75조의2로 이동 <2002.3.25>]

**제75조의2(업무상황등 공표)**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를 "사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9]

[제75조의1에서 이동, 중전 제75조의2는 제75조의3으로 이동 <2002.3.25>]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겸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제75조의2에서 이동, 중전 제75조의3은 제75조의4로 이동 <2002.3.25>]

**제75조의4(권한의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2.8]

[제75조의3에서 이동 <2002.3.25>]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상의 청산 절차가 없어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19]

## 제4장 지방공단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2·12·8>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제57조 내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 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3.25>

[본조신설 1980·1·4]

**제77조(비용부담)**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회의 결의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신설 2002.3.25>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5]

**제77조의5(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증은 재해의 복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3.25]

**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당해 출자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을 해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본조신설 2002.3.25]

**제77조의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제64조·제71조·제75조의3 및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제5장 보칙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③ 행정안전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공기업에 한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6.10.4, 2008.2.29>

[전문개정 1992.12.8]

**제78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후 1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1. 3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등 경영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1.29]

[총전 제78조의2는 제78조의3으로 이동 <1999.1.29>]

**제78조의3(경영지도법인)** ①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관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2008.2.29>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설립·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2.12.8]

[제78조의2에서 이동<1999.1.29>]

**제79조(국고지원)** 국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자본금 기타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2.12.8>

[본조신설 1980.1.4]

**제79조의2 삭제 <2002.3.25>**

**제79조의3(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9, 2008.2.29>

[본조신설 1992.12.8]

**제80조 삭제 <2002.3.25>**

## 제6장 벌칙

**제81조(벌칙)** 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이 제65조·제66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1.29]

**제82조(과태료<개정 1999.1.29>)** ① 정당한 이유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각각 부과·징수한다.<신설 1999.1.29,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9.1.29,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1999.1.29,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99.1.29>

[본조신설 1980·1·4]

**제83조(벌칙적용의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2.3.25>

[본조신설 1980·1·4]

#### 부칙 <제2101호, 1969.1.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산의 평가)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재정상태를 확정하고 자산의 적정한 감가상각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원시자본) 지방공기업의 원시자본은 이 법 시행일 현재에 있어서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평가액에서 동일의 부채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 부칙 <제3233호, 1980.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4371호, 1991.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중 "부산시·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조합원으로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부산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가 조정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 조정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하고, 동 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국무총리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가 공동설립단체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기타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4517호, 1992. 12. 8>**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0호, 1996. 12. 30>**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8호, 1999. 1. 29>**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6665호, 2002. 3. 25>**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보증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경영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60호, 2004. 12. 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9호, 2005. 3. 24>**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0>생략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589호,2005.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028호,2006.10.4>**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성과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사의 사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246호,2007.1.19>**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민영화된 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민영화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8450호,2007.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9> 까지 생략

<223>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6조의2제1항, 제68조제3항 전단, 제74조, 제7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제78조의3제2항, 제79조의3 및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 및 제64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은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3.9>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3. 하수도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사업의 명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6.19]

##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3조(관리자의 임기)**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전보 또는 승진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로 할 수 있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는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20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0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 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되는 경비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제6조(계리방법)** ①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거래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직영기업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지방직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지방직영기업은 그 사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건전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인도·대체 또는 폐기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2.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양도·상각 또는 소멸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증감 또는 이동에 수반하는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그 채권·채무의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
4. 부채 및 자본의 증감에 대하여는 현금의 수납·지급 및 대체가 있는 날 또는 채권·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연도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정의 구분)**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의 과목구분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계정의 과목구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계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기업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수반하는 자산증감의 과정
2. 용품 기타 자산의 생산제작·수리·가공·구입·보관 및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의 계산 과정
3. 비용대체를 한 경우 그 과정

**제12조(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고정자산은 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3조(부채)**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기타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제14조(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
2.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

[본조신설 2002.6.19]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31]

**제16조(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원가계산)**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1. 기능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영업비용에 의할 것

2. 급부별 원가계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계정과목중 급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의할 것

②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기능별로 그 업무와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선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 급부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2.6.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①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업무의 예정량
2.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의 금액
3. 계속비
4. 채무부담행위
5. 지방채
6.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금지과목
8.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보조금
9. 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
10. 삭제 <2002.6.19>
1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12. 회전기금의 수입 및 지출예정액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수입 및 예정지출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대별하고, 다시 이를 관·항으로 구분한다.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2.6.19>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당해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와 전사업연도의 예정대차대조표 및 예정손익계산서

**제21조(예산의 집행)** ① 관리자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지방직영기업의 적절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세항간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고정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 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가상각비
2. 자산감모비
3. 제품·상품의 매출원가
4. 자산의 정리 또는 변동에 수반하는 장부가액의 삭제금액
5. 발생품등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품 장부가액
6. 부채성 총당금계정으로의 편입액
7. 기타 발생주의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대응계상되는 손비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금융기관의 지정)**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지정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2.6.19, 2005.3.31>

1.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② 지정금융기관은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기관과 수납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기관으로 구분하고,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이를 총괄하되, 출납취급금융기관이 2이상인 때에는 그중에서 관리자가 지정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 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는 증권에 의한 납부,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출납 사무를 포함한다.

**제27조(지정금융기관의 출납사무취급)** ① 지정금융기관은 납입통지서와 기타 납입에 관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할 수 없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관리자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을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을 수납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지방직영기업의 예금 계좌에 넣어야 하되, 출납취급금융기관(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지정금융기관은 그 수납금을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개설된 당해지방직영기업의 예금계좌에 넣어야 한다.

④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외의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의 지출의 지급을 한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① 지정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지정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취급하는 출납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지방직영기업의 지급은 관리자가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수표인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발행한 수표로서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수표를 소지한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① 지방직영기업의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여비 및 일반운영비
  3. 지출원이 없는 부서의 경비
  4.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5. 각 부서가 시행하는 공사·제조 또는 조림에 소요되는 경비
  6.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7.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9.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의 지급
  10.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에서 지급하는 경비. 다만, 도의 경우에는 도청이 소재하는 시의 관할구역밖에서 소요되는 운반경비를 포함한다.
  1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상여금과 기타직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정액수당 및 정액의 복리후생비
  12. 각종 수당·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13.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또는 공사·시험·검사에 소요되는 재료의 구입비
- ② 제1항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제7호·제9호 및 제11호의 경비는 교부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6.19>
1. 제1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제10호·제12호 및 제13호의 경우 : 1천만원
  2. 제1항제2호의 경우 : 5백만원
  3. 제1항제5호의 경우 : 2천만원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서의 일상경비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월 1회 교부
  2. 수시로 교부하는 비용 : 소요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가능한한 분할하여 교부
- ④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경비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적으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① 관리자는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계되는 출납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에 관계장부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①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할 금액을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기관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의 총괄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업출납원과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2.6.19>

1. 기업출납원이 담당하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분장하는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현금취급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2. 요금 기타 사용료 또는 수수료의 징수를 결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3. 계약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공무원
-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대리하거나 분장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출납원·수입원 및 지출원의 사무를 대리 또는 분장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자금운용계산서 또는 현금흐름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결산부속명세서

②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02.6.19>

1. 수익비용명세서
2. 고정자산명세서
3. 재고자산명세서
4. 지방채명세서
5. 예산전용조서
6. 예비비사용조서
7. 예산이월액조서
8. 계속비집행조서
9. 계속비정산보고서(계속비에 관련된 계속연도 또는 그 이월된 연도가 끝난 경우에 한한다)
10.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
11. 전년도이월액사용조서
12. 미수액조서

13. 미지급액조서
14. 불납결손액조서
15.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조서
16. 성질별 세출결산명세서
17.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37조(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39조(결손의 처리)**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당해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결손금은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이익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한 때에는 이익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적립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지방의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① 감채적립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감채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지방직영기업의 건설 또는 개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건설개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7호·제8호 및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처분하는 자산은 이를 제외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인 자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1건당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득·처분결과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자산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3.9]

**제43조 삭제 <2002.6.19>**

**제44조(경영공시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 제33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3.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후 5일 이내에, 기타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등사를 요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45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지방공사·지방공단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2.6.19, 2005.3.31>

1.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5인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실적이 있을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아니어야 한다.

<신설 2002.6.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2.6.19>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사업별 수지분석
3.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4.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5.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관계전문가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2.6.19>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개정 2005.3.31>)** 공사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법인의 자본금의 20퍼센트 이내
2. 공사의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퍼센트 이내

[본조신설 2002.6.19]

**제48조(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의 지사의 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51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제49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등기의 신청)** ①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공사의 사장이 행한다.  
②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주식인수·현물출자·주금납입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55조(이사)**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사장 및 감사의 임면)** ① 사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감사는 지방공기업을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당해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 ③ 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감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외에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임기준

-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된 경우

다.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른 해임명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의 연임기준 또는 해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결과 및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의 순으로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위 평가 및 하위 평가의 범위와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은 제68조의2에 따른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및 제7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3.9]

**제56조의3(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④ 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지방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⑧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 [본조신설 2002.6.19]

**제56조의4(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 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6.19]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작성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36조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31]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0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잉여가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하며, 잔여금액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사업준비등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출자자에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배당할 수 있다.

**제62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 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연도 부채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⑤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5.3.31]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기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제65조(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사는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제66조(공단설립운영)** 지방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내지 제56조, 제56조의2 내지 제56조의4, 제57조, 제58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6.19, 2007.3.9>

**제67조(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신설 2002.6.19>**

**제67조의2(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6.19]

**제67조의3(상환보증범위)** 법 제77조의5 후단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행사를 위한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조신설 2002.6.19]

##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68조(경영평가)** ①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 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2.29>

1. 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후 4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8조의2(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경영평가기준의 설정
2. 경영평가대상의 선정
3. 경영평가기관의 지정
4.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대학의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의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및 경영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6.19]

**제69조(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정·개선요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결과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5.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① 법 제7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2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 ① 법 제7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이하 "경영진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경영진단위원회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경영진단의 전문적·기술적 사항
2. 경영진단지표에 관한 사항
3. 경영진단반이 제출한 경영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진단제도 발전등에 관한 사항

③ 경영진단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2.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3. 대학의 부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경영진단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경영진단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⑥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회의)** ① 경영진단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진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4조(의견청취)** 경영진단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기타 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게 대한 감봉·해임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법인의 청산 및 민영화
4. 기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장 보칙

**제76조(경영지도법인)** ① 법 제7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경영지도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은 회장(원장 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개정 2002.6.19, 2005.3.31>

②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선임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회장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선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형성을 위한 출연과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7조 삭제 <2002.6.19>

**제78조(보고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2008.2.29>

1. 법 제49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설립사항
2.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공동설립사항
3. 법 제56조제3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정관변경사항
4. 법 제58조제2항 및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과 감사의 임면사항
- 4의2. 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법인·출연법인의 설립사항 및 추가 출자·출연사항
5.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결과
6. 삭제 <2002.6.19>

7. 기타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청산·민영화등의 중요변동사항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9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0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6.19]

**부칙 <제16213호, 1999.3.31>**

①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연자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항목중 이 영의 개정으로 계정재분류를 하여야 할 항목은 이 영의 계정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는 이를 창업비로 표시한다.

③ (경영지도법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에 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629호, 2002.6.1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금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초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부터 적용한다.

③ (경영개선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사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2호,2005.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8>생략

<199>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제3호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의2제2항제4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제4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0>내지 <241>생략

**부칙 <제19925호,2007.3.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장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18조제2항, 제22조 후단,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제3호, 제56조의2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호·제4항, 제68조의2제1항·제2항·

제5항, 제69조제5호, 제70조제1항제4호·제2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3항, 제75조, 제76조제2항·제5항·제6항,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9조제2항 전단·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7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차관보"를 "행정안전부 차관보"로 한다.

제72조제1항·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81> 부터 <105> 까지 생략

##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3.4 행정안전부령 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4. "계속기록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의 수불이 행하여질 때마다 그 종류별로 수량·단가 및 금액을 차례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선입선출법"이라 함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의 재고자산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회계연도말에 그 가격에 의하여 판매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출원가를, 판매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유형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에 1년이상 사용 가능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으로서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선박·차량·운반구 및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8. "무형자산"이라 함은 장기간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형의 권리로서 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어업권·차지권·창업비 및 개발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
9. "환치자산"이라 함은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는 대신 교체시에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 전액을 일시에 비용으로 계리하는 자산을 말한다.
10. "정액법"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각 회계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방법을 말한다.
11. "정률법"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상각률을 곱하여 매 회계연도의 감가상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재무제표"라 함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자금운용계산서를 말한다.

**제3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① 영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9월1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당해지방공기업요금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미수금과 미지급금의 계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계리 하여야 한다.

1. 미 수 금 :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2. 미지급금 :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제6조(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 ①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통계관리와 회계제도의 표준화를 위하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사업은 별표 1의 지방공기업업종분류표에 따라 이를 구분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은 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2(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통보하는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4>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개정 2005.3.31>)** 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 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

**제8조(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는 원가발생을 귀속시킬 수 있는 조직상의 단위로 분류되어야 한다.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2.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4.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5. 기타 기능별 부서책임자가 관리할 수 없는 비용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배수량 또는 조정량(m<sup>3</sup>)
2. 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km)
3. 지방도로사업 : 도로의 길이(km)
4. 주택공급사업 : 세대·동 또는 호수
5. 토지공급사업 : 필지
6. 의료사업 : 진료환자수 또는 병상수

**제11조 삭제 <2002.7.26>**

**제12조 삭제 <2002.7.26>**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기준)** ①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재고자산은 적정한 평가액에 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이 훼손·변질·기능감퇴 또는 멸실에 의하여 그 가치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14조 (재고자산의 출납)** ① 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출납을 계리하는 경우 그 단가의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에 의한다.

**제15조 (고정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고정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1. 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구입에 소요된 가액
2.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당해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금액
3. 교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
4. 무상으로 양수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고정자산은 적정한 평가액

**제16조(고정자산의 재평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당해지방직영기업 설립일이 속한 연도부터 5년마다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고정자산의 잔존가액)**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존가액은 영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 당해연도 감가상각액에 가산한다.

**제18조(토지등의 원가계산)** ① 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용지비
2. 도급비 또는 공사비
3. 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4. 설계비·감리비등 용역비
5. 기타 제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①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1. 유형자산은 별표 2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및 별표 3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무형자산은 별표 5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중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그 내용연수와 달라진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연수에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유형자산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이 통상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2. 지반이 융기 또는 침하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이 개발·보급된 경우
  4. 사용되는 장소의 상황 때문에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부식된 경우
  5. 통상의 수리 또는 손질을 하지 아니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전문개정 2003.9.19]

**제20조(감가상각등의 기준)** ①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은 사업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미만인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환치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계리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②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지방공기업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3.9.19>

**제21조(감가상각액의 계리)** ① 지방공기업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전년도 장부가액에서 당해연도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계리한다.

**제22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생략: 서식1%>
2.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생략: 서식2%>
3.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생략: 서식3%>
4.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생략: 서식4%>
5.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생략: 서식5%>
6.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생략: 서식6%>
7.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생략: 서식7%>
8.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생략: 서식8%>
9. 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생략: 서식9%>
10.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생략: 서식10%>
11.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생략: 서식11%>

**제23조(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보관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등의 전산보조 기억매체는 해당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 보고서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실적 및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당해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임기만료일이 당해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임기만료일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④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는 법 제46조제2항에 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연봉액(연봉액의 공시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3. 사장의 경영목표 및 권한

4.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제재 또는 불이익의 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3.9]

[중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07.3.9>]

**제23조의3(회계처리 등)** 법 제64조의2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48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92조까지(제92조 제6항은 제외한다), 제9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본다. <개정 2007.7.25>

[전문개정 2007.3.9]

[제23조의2에서 이동 <2007.3.9>]

**제2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부칙 <제44호, 199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호, 200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03.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호, 200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 200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 2007.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계처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 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특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관련된 입찰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 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 부터 <33> 까지 생략

##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

[전문개정 2007.12.31 조례 제3693호]  
[개정 2008.06.04 조례 제3743호]  
[개정 2008.07.03 조례 제3757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주민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기금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7.3.>

### 제2장 기금의 자원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용자금
2.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4. 기금의 운영수익금
5.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 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채권의 발행)**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173조에서 정한 증권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채권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발행 및 이율)** ①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 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채권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④ 매입대상별 채권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매출절차)**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매입면제)** ①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채권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받아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허가증의 교부 시 또는 신고·등록관청의 접수 시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 시

**제11조(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상환시작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시작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시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시작일부터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③ 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 받은 때에는 채권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효)** ① 채권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시작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3조(청구권의 제한)** ① 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할 수 없다.

② 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도지사는 그 해당 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4조(중도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상환 시작일이 이르기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 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매입원인이 된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매입자의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중도상환 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하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 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제3장 기금의 운영

**제16조(용자대상)** ①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용자받은 금액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借換)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을 용자할 수 있다.

**제17조(용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용자 하도록 하며,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지역간의 형평, 사업의 수익을 고려하여 용자대상을 정한다.

**제18조(용자조건 등)** ① 용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 및 용자약정과 용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가 제4조제5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해당 목적사업에 용자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용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날짜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용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용자를 받은 기관이 용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날짜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② 용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용자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 상환원리금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3. 「지방공기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의 지출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발행계획
2. 채권상환계획
3. 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용자계획
4. 용자금회수계획 등

**제2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경기도 지방공기업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4장 지역개발기금 관리위원회

**제24조(구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25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3.>

1. 당연직 :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 관련부서의 장

<개정 2008.6.4>

2. 위촉직 : 공인회계사·금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참석치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순위의 결정 및 용자배분
2. 공채의 발행 등 기금조성방법
  - 가. 기금운용계획
  - 나. 채권의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
  - 다. 기금용자에 관한 사항
  - 라. 기금이자율의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행된 지방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제3757호,2008.7.3.>

제1조 부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 을 각각 “기획조정실장” 으로 한다.

④~(19) 생략

##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전문개정 2008.2.18 규칙 제329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출절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매입필증, 매입증서는 각각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의 통보)** 채권을 매출한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의 신고 접수 시에는 그 내역을 증권예약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상환절차)**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채권 원리금의 상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융자금의 이율)**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상·하수도사업 및 청소·위생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3.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② 제1항의 예외로 융자사업의 추진기간 및 투자비의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은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 전액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을 연체한 때에는 약정이율에 연체일수를 곱한 금액의 10퍼센트를 추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시·군일반회계의 금고계약을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과 체결한 시·군의 경우는 시·군 금고은행에 매출업무에 한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전국 어느 농협에서나 취급하며,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탁은행은 자기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① 조례 제25조제2항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관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관련부서의 장은 경제·보건위생·환경·도로·도시정책·신도시개발 및 상하수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신용사업본부장, 그 밖의 공인회계사 등 관련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채권의 계약보증금 사용)** 채권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16에 따라 상환기한이 이르기 전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0조(증권의 폐기)** ① 도지사는 상환 완료된 채권증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 후 3개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총괄점에 보존하도록 위탁하였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도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할 수 있다.

**제11조(사고신고 및 처리)** 분실·도난·멸실·훼손 등 사고발생의 경우 채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고, 사고채권의 처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 최고 및 제권판결절차의 예에 따른다.

**제12조(매출 및 상환업무의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와 여러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 및 상환업무 수탁은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상장)** 채권증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처리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 ◆

[제정 1996.01.12 조례 제2616호]

[개정 2006.11.13 조례 제3567호]

[개정 2008.06.04 조례 제37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개정 2008.6.4>)**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년이상 개업중인 회계사·세무사중에서 8명 이내의 경기도 고문회계사·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2008.6.4>

② 도지사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③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2008.6.4>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6.4>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개정 2008.6.4>

2.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세무고문 수행을 기피한 경우<개정 2008.6.4>

3. 정원의 조정 및 도정운영상 필요한 경우<개정 2008.6.4>

4. 도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개정 2008.6.4>

5. 무성의하게 업무수행을 한 경우<개정 2008.6.4>

6. 회계·세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개정 2008.6.4>

⑤ 고문공인회계사는 지역개발기금 업무담당 실·과장 또는 담당관이, 고문세무사는 세정 업무담당 실·과장이 각각 운영한다. [신설 2006.11.13]

<개정 2008.6.4>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세무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13, 2008.6.4>

2. 도가 설립한 경기도립의료원과 도가 출자한 법인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13>

3.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개정 2008.6.4>

**제4조(자문비용)**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자문실적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13, 2008.6.8>

1.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신설 2006.11.13]
2.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06.11.13]
3. 긴급을 요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신설 2006.11.13]

**제5조(회계·세무 자문실적부의 비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세무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2008.6.8>

**부칙 <199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3>**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고문회계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회계사로 본다

**부칙 <200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기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

[개정 2002.12.16 규칙 제3034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방공기업(이하 "지역개발기금"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16>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 예산담당관 <개정 99.9.20, 2002.12.16>
  2. 수입원 : 공기업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2.12.16>
  3. 지출원 : 공기업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2.12.16>
  4. 자산출납원 : 공기업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2.12.16>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역개발기금업무담당자 <개정 2002.12.1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5억원이하의 공사, 1억원이하의 용역·제조·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천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 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경기도재무회계규칙,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경기도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2장 회계처리기준과 장표

### 제1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5조(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서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측정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총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총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 제2절 회계장부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 가. 총계정원장 (별지 제1호서식)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서식)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서식)
  -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사. 유형고정자산대장 (별지 제7호서식)
  -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2. 기타 장부
  -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
  - 다.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별지 제12호서식)
  -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장부

**제11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고 붉은 글씨로 쓴다.
-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등의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의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로 대조하여야 한다.

-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제3절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같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쓴다.

**제19조(금액수량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서명·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3장 예산

### 제1절 예산의 편성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하여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① 관리자는 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이내에 계속비이월비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난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 제2절 예산의 집행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별·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국장, 부장, 실·과장)에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5천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이외의 것으로 5백만원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의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사항은 되지 아니하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제32조와 영제18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제29조 및 영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마련지출)** 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초과수입금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수입예상액 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에 대한 조치사항
3. 기타 추가수입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예정액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절 보고 및 통제

**제35조(예산집행보고)** 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재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제4장 수입 및 지출

### 제1절 수입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 수입원은 세입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 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제24조 및 제25조2의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을 납부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게 영수증(별지 제2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집중관리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과의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당해 사업의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 과오납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에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입예산정리부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절 지출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예금청구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의 위반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① 지출예산의 집행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구매예산의 지출절차 및 기장)** ① 재고계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한 때에는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교부자금·개산급에 대한 정산급·선금급의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윗부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과목별 교부자금액등의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① 지출원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 범위안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9호서식)를 발행한다.

**제48조(수표의 정정등)** 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윗부분 여백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손·오손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긋고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자금(지역개발기금등)을 출납대행기관에 교부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자금(상환자금등)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자금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여 출납대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장·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긴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생긴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도장)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환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고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채무면제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시효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절 예수금과 유가증권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수령증을 징구한 후에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귀속)** 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유가증권의 관리)** ① 유가증권은 소유유가증권과 일시보관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 소유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의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절 출납담당공무원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금고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 지출원·수입원·자산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한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되,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에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한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후에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에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로 날인한 후에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는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계·인수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67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절 지정금융기관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① 영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를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금융기관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출납취급금융기관·당해 금융기관이 3자계약서를 작성한다.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출납취급금융기관·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기타 사업소등의 장, 당해 금융기관이 4자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① 출납취급금융기관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출납의 정리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수령인·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7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38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39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40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41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41호서식)

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37호의2서식)
2. 세출금내역장
3.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4. 유가증권수급부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으로 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로서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때의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 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 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계좌의 잔액을 초과한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한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이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한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또는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월계표)** 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지정금융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 영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자산회계

### 제1절 재고자산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상 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
2. 제 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상품·부산물등
3. 반제품 : 자가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등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등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희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한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재고자산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사업연도 말인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입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는 때
2. 매수자가 없는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87조(재생수선)** 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중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자산을 재생한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88조(재고조사)** 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경우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9조(실사의 입회)** 제8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0조(재고조사결과의 보고)** 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이내(연도말 재고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8까지)에 별지 제45호서식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때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재고의 수정)** ① 재고실사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관리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에서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2조(손·망실의 보고 및 처리)** 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자산출납원이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견전가액 또는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고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한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3조(월말보고등)** 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 제2절 고정자산

**제94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계상한다.

**제95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6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97조(고정자산처분등)** 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총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감가상각총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고정자산처분손익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98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의 실지조사결과가 대장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 제6장 경영분석 및 결산

**제99조(경영분석)** 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등의 방법에 의하여,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성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00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01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등)** 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장부를 마감한후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계상

3. 손익계산기록의 수정 (선급비용·선수수익·미지급비용·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자산의 자산대체정리

- 8. 다음연도중에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 9. 기타 결산정리사항

## 제7장 채권관리

**제103조(채권의 관리책임)**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자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4조(채권의 관리)** 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05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 관리자는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등 부실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106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조례·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7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이행기간의 연장·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8조(채권증감 및 현잔액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잔액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장 보칙

**제109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제110조(회계서류의 보관등)** 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등 취급

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와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및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조 기억매체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경기도 산하단체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칙 ◆

[제정 2007.7.9 규칙 제3263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산하단체의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계약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여 도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하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지사가 출연·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2. “산하단체 경영평가” (이하 “경영평가”라 한다)라 함은 도지사가 산하단체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산하단체 경영성과계약” (이하 “경영성과계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단체장의 경영 목표와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에 대하여 매년 도지사와 단체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제2장 경영평가

**제3조(경영평가의 실시)** ① 도지사는 산하단체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내용, 경영성과, 기관의 역량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영평가의 대상기관(단체)은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한다.

**제4조(경영평가 실시계획의 통보)** ① 도지사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산하단체에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하단체장은 해당 연도 경영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영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서
2. 재무재표와 그 부속서류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경영평가의 위탁)** 도지사는 산하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은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평가 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영평가 결과 조치사항을 권고 받은 산하단체는 그 조치 결과를 권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장 경영성과계약

**제8조(경영성과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단체장”이라 한다)은 매년 도지사와 1년 동안 수행하여야 할 경영목표, 성과에 따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단체장이 공석이 된 경우 후임 단체장은 전임 단체장의 계약 내용을 승계하되,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산하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단체장은 당해 단체의 상임이사 및 감사 등과 이 규칙에서 정한 경영성과계약 또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계약을 도와 사전 협의 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① 경영성과계약은 도지사와 단체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매년 3월말 이전에 체결한다.

② 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임기 만료일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임기 만료일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경기도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도보 및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5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단체장의 경영목표
3.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도지사는 단체장의 경영성과 계약에 따른 이행실적평가를 다음 연도 5월말까지 실시하고,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성과급의 지급 등)** 도지사는 단체장의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산하단체는 매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그 외의 산하단체는 매년 6월 급여 지급일에 성과급을 각각 지급하되, 그 실적에 따라 인사조치 요구 또는 연봉조정 등을 할 수 있다.

## 제4장 경영평가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산하단체의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계약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를 심의·조정하여 그 평가등급 부여
2. 경영성과계약의 내용 검토 및 이행달성도 평가 심의·조정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경기도 업무평가 및 성과 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평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필요 시 실·국장 및 도의회 의원 등을 별도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 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하 단체 경영평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관련 서류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하 단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단체의 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업무의 실·국·본부장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의견제출 또는 회의참석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7.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재정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5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30>

1. "국가균형발전"이라 함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혁신"이라 함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체계"라 함은 지역혁신을 위하여 대학·기업·연구소·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 등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거나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4.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낙후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
  -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도서
  - 다.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 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 마. 그 밖에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6. "농산어촌"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촌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2장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제4조(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금융활성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1.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④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에 있어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실적과 당해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혁신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5.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적합하게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협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역혁신발전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와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실적과 당해연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시·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시행이 당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정부는 부문별 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

**제10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예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혁신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당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지방대학의 육성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지방대학과 산업체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졸업생에 대한 채용장려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산·학·연 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과학기술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간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통신 육성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민생활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화기반 육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2. 지역금융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물류업 및 유통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투자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 시·군·구별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현황
4. 지역전략산업의 육성현황
5. 지방대학의 육성 등의 현황
6. 지역과학기술의 진흥현황
7. 지역의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진흥 현황
8. 지역문화·관광의 육성현황
9.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현황
10. 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현황
11.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현황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5.11>

1.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 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26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 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혁신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원단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협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협회는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도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시·도협회와 분과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 2 이상의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시·군·구 지역혁신협회의 설치 등)** ① 시·군·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혁신협회(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협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당해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군·구협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2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군·구협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회계의 관리·운영)**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12.30>

**제33조(소속재산)** ① 다음 각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6.1.11, 2006.12.30>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삭제 <2008.3.28>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재산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26, 2006.12.30, 2008.3.21>

1.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분의 8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6. 삭제 <2006.12.26>
7.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전입 되는 전입금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9.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11.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1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소속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 12의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1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
14.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5. 삭제 <2008.3.28>
16.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30, 2008.3.21>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 다.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 라.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업
  - 마. 지역의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 <2008.3.28>
  4.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7.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8.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9.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10. 그 밖에 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용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 ③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제35조(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세출)** ①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30>

1.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분의 20
2. 삭제 <2006.10.4>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삭제 <2008.3.2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7.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원리금
8.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
9.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30>

1.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2.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3. 지방대학의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4.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5.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6.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용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7.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9.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1.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12. 그 밖에 지역혁신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소요경비의 지원
13. 삭제 <2008.3.28>
-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 등
  -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 나.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출연·보조·용자 및 지원 등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삭제 <2008.3.28>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6.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30]

**제37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의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5조의2제2항제1호 다목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6.12.30,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2.30, 2008.2.29>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40조(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시책의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42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사용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 내지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6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10호,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제48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자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원하는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주세법」에 의한 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부칙 <제7061호,200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각각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정으로의 전출금

⑥ 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⑦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⑧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부칙(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7848호, 2006.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③ 생략

#### 부칙(기업예산회계법) <제8047호,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8084호,2006.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생략

#### 부칙 <제8160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8> 까지 생략

<33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항·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3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975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05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9>

**제2조(그 밖의 낙후지역)**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감소율·재정상황 및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 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낙후지역을 3년마다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3.9>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받은 법인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6.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제2장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제4조(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이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계획안"이라 한다)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과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혁신발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제8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시 중요사항)**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2. 시·도가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도와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
4.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제9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정·보완시 중요사항)** 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혁신발전 목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발전사업 추진체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재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③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등의 평가 <개정 2007.3.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전년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년도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9, 2008.2.29>

**제13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등의 종합평가)** ①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평가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보고서를 반영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각각 종합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3.9, 2008.2.29>

1.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2. 사업목표의 달성도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

**제1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중 다음 각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과 수도권안의 폐기물매립지에 소재한 기관
4. 수도권안에 소재하거나 설치된 공연시설·전시시설·도서시설·지역문화복지시설·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안에 소재하거나 설치된 문화유적지·묘지·매립지·남북출입장소·방송시설·철도역·공항과 그 관련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업무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기준 및 절차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사업체수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의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수도권인구의 안정화·적정화, 수도권의 삶의 질 개선 및 수도권 경쟁력강화 등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관리의 기본방향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의2(지역 생활여건 개선의 기본방향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교육·의료·복지·문화·주거·환경 등 분야의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지역 생활여건 개선의 기본방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별 생활여건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 생활여건 개선의 기본방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 생활여건 개선의 기본방향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3.9]

**제18조의3(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한 사업
2. 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도시와 농어촌의 연계를 통한 도·농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9]

**제19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일괄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안을 제출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토의견을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지사에게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8.2.29>

⑥ 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앞서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사업 및 그 체결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가균형발전계획 또는 주요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제21조(위원회의 위원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9>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회에 20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2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위원장, 위원회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획단의 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가균형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6.12>

③ 그 밖에 기획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혁신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육에 대한 지원,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으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9, 2008.2.2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개발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조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3.9, 2008.2.29>

④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7.3.9>

**제31조의2(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에 관한 통계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축된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공동 이용방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3.9]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시·도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의장 등이 추천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시·도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도 협의회, 분과협의회의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2. 시·도 협의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시·도 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 협의회 등의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33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군·구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구청장이 공동으로 시·군·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3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2(균형발전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균형발전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의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차관 및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각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④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7.3.9]

##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총괄결산 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소속재산의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임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당해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지역별 토지수급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제외사업)**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의 사업을 말한다.

**제37조(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3.9, 2008.2.29>

1. 국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 제38조(용자의 조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용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3.9, 2008.2.29>
- ② 법 제3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용자의 신청절차·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개정 2007.3.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 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9>

- 제39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의 지원대상사업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중요도 및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견
  8.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시·군·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9, 2008.2.29>

- 제40조(예산의 요구)**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 신청내역·조정내역 및 조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가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사업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1조(위원회의 의견통보)** ①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은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총액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고, 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예산에 관한 의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및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제42조(차등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규모 및 보조 비율의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08.2.29>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평가결과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의 발전정도
4. 예산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확보현황, 당해사업의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세출예산의 통합편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수의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의 교부시 해당 사업내에 수개의 경비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2.29>

**제44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5조(예산의 전용범위)** 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 예산의 총액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 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요청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에 의하여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46조(예산의 이월범위)**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4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 제3항에 의한 회계의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7.3.9>

②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신문공고료·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을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탁재산을 임대하게 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 매각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 ④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제9호,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6.4.28, 2007.3.9>

1.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용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용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8346호,2004.3.29>**

- ①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별표 제7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④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⑤ (직원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에 의한 직원 및 파견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직원 또는 파견공무원으로 본다.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⑫ 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1급상당 비서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으로 한다.

<40>내지 <241>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⑦ 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27호,2007.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제14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제2항·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제2항,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제8호·제3항 후단, 제40조제2항·제3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2호, 제45조제1항 전단·제2항제3호, 제46조 전단, 제47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86> 까지 생략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3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추첨식인쇄복권 :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 나. 즉석식인쇄복권 :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 다. 추첨식전자복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 라. 즉석식전자복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 내역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 마. 온라인복권 : 복권의 최종구매자가 복권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부여받아 출력된 복권을 구매하고,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2. "당첨금"이라 함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복권유통비용"이라 함은 수수료·광고비·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당첨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복권수익금"이라 함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 ② 「관광진흥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 제2장 복권의 발행 등

- 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복권위원회,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의한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종류·액면가액 및 발행조건을 정한다.
- ③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종류·액면가액·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연간복권 발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복권위원회는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 4월 말일까지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제한 등)**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정한 복권액면가액외의 가격으로 최종구매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구매자 1인에게 1회에 20만원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그 최종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구매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2.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4.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제한 등)** ① 복권위원회·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계약에서 정한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최종구매자를 위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복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복권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복권에 관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매체·광고문구·광고비용·광고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광고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복권사업자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당첨금 등)** ① 복권사업자는 복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복권당첨자 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첨금의 합계액이 동일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 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회차에 발행되는 복권액면가액의 총합계액이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복권의 경우에는 동일 회차에 판매되는 복권액면가액 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1매당 가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온라인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해 당첨금은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안에서 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 ④ 지급청구된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①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인쇄복권·추첨식 전자복권 및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80일간, 즉석식인쇄복권 및 즉석식전자복권의 경우에는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5.12.29>

- ② 복권사업자는 복권면에 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 기금에 귀속된다.

**제10조(당첨자의 보호)**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은 당첨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재위탁)** ① 복권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법인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등에게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수탁 또는 재수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복권발행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제적·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장 복권위원회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액면가액·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 10.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 11. 최종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다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복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2. 다음 각목의 자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가.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다.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 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복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복권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복권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자료제출의 요구 및 출입·조사<개정 2005.12.29>)** ① 복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을 발행·유통 및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복권 관계 서류·장부·사업보고서 등의 자료 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복권의 발행·관리·판매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하여 그 설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② 복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권에 관한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제19조(조직과 운영 등)** ①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권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법에 정한 것외에 복권위원회의 운영·회의 및 사무처의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복권관련 법인·단체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및 복권관련 법인·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의 파견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장 복권기금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을 설치한다.

②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관리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동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등에 전출·예탁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6.10.4>

③ 복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0은 다음 각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5.12.29, 2006.2.21, 2007.4.11>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6. 지방자치단체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 증진자금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은 그 비율을 100분의 5 이내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05.12.29>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장애인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4.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 복권으로 인한 사행심을 억제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비용 및 복권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한다.

⑤ 복권기금의 배분방법·배분시기 및 배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23조제1항의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은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에 관한 계획서(이하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를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연도 4월 말일까지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등"이라 한다) 등은 복권수익금의 집행명세 등 결산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복권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권기금의 사용용도·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에 관한 사용신청서(이하 "복권기금사용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3월 말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권기금사용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제출)**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복권기금 사용에 대한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국채·공채의 매입
2.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의 예탁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29조(구분계리 등)**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등은 배분된 복권기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계리하거나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30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2007.10.17>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1조(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효율적 집행,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복권 및 복권기금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①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은 기관의 장등은 그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복권의 판매매수, 판매금액, 수수료 지급 및 복권수익금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 6월마다 당해 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이하 이 조에서 "복권관련정보"라 한다)와 복권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운용실태를 매 6월마다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의 공개방법·공개시기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의무)** 복권사업자는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서류·장부 등(서류·장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복권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3.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을 구매·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4.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5.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의 구매를 대행한 자
6.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자
7.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1.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5.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인에게 판매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159호,2004.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제2호·제4호의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제5조제1항, 제6조

제4항, 제7조, 제34조제2항제1호·제5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복권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없이 200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및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기금의 운용 계획변경안(이하 이 조에서 "복권기금운영계획등"이라 한다)을 해당 기금운용심의회(복권기금운영계획안의 경우에는 복권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권기금운용계획등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2005년도 복권발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05년도 연간복권발행계획서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2005년도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2005년도 복권기금사용신청서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부터 1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복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는 복권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은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으로 본다.

1. 국민체육진흥법
2. 근로자복지기본법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6. 산림법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8. 기술개발촉진법
9. 주택법
10. 지방재정법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부터 60일 이내에 복권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이 연합하여 발행하는 온라인복권의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온라인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제8호 내지 제10호의 법률에 의한 복권의 발행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로부터 복권의 발행을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로 보는 자로부터 위탁 또는 재위탁을 받아 복권을 발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의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74조를 삭제한다.

③ 국민체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⑤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 근로자복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53조를 삭제한다.

⑦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한다.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⑨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106조를 삭제한다.

⑩ 산림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⑪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복권및복권기금법

####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486호,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복권및복권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의 사용용도란중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의3"으로  
한다.

② 생략

####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로 한다.

별표 제9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로, "산림법 제107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으로 한다.

<28>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6>내지 <68>생략

**부칙 <제7798호,2005.12.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복권당첨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2>생략

<4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별표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의 각 호의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제4항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 회계
--	---

<44>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0조"를 "제75조"로 한다.

⑨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제8344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⑥ 내지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제8655호,2007.10.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7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별표: 기금등에배분된복권수익금의사용용도[제23조제2항관련]**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1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

1. 복권의 종류와 명칭
2.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발행매수·예상판매금액·예상판매매수·액면가액·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3.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내역
4. 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5. 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교부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제3조(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제4조(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대상자의 수
2. 계약신청대상자 및 우선계약대상자의 요건
3. 판매수수료 등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선정방법
5. 계약대상자의 선정일정

**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① 복권사업자 및 복권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

1. 「방송법」에 의한 방송광고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재수탁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수탁사업자
2. 수탁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수탁사업자
3. 재수탁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재수탁사업자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권사업자
2. 복권수익금의 사용용도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이 파손 등으로 당첨여부 또는 진위를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5.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6. 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내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7. 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8. 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제6조(이월횟수의 제한)**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라 함은 2회를 말한다.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2006.6.12>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
2. 삭제 <2006.6.12>
3.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같음하는 서류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8조(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2006.6.12>

1. 재위탁계약서안
  2.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3. 삭제 <2006.6.12>
  4.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의2.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탁운영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재위탁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4. 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 ③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12>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전자복권·즉석식전자복권 및 온라인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활동·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 장기수지전망 및 예상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2.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7. 국토해양부
8. 국가보훈처
9. 중소기업청

[전문개정 2008.2.29]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복권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복권위원회운영규정)**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복권기금의 재원)**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금

**제16조(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 ①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 2006.6.29, 2006.8.4, 2007.9.10>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 100분의 14.680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 100분의 12.100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 100분의 6.195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100분의 7.415
5. 지방자치단체 : 100분의 20.145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 100분의 20.145
7.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00분의 5.000
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100분의 6.820
9.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100분의 7.500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2.2>

③ 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된 경우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 2006.12.29>

**제18조(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용용도·사업내용·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복권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용용도·사업내용·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 사용신청금액
3.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4.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6.2.2>

1.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2.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제21조(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법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

1.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을 제외한다)
2. 복권유통비용
3. 당첨금지급현황

②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의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말일까지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2. 법 제5조 및 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계획서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 중 법 제5조 및 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출입·조사
2. 법 제36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 제기의 접수·통보

③ 복권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 위임된 권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시장등에게 복권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개정 2006.2.2>)**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의 금액,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②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

③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

④ 복권위원회 또는 시장등은 과태료를 국고금관리 법령 또는 지방재정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2.2>

#### **부칙 <제18316호,2004.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1조제4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비율의 재조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기금 등의 자금소요를 감안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②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녹색복권관계업무"를 각각 "녹색자금관계업무"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⑪ 내지 <35>생략

#### **부칙 <제19315호,200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19513호,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6>생략

<107>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8>내지 <241>생략

####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한다.

<26>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8호중 "「산림법」 제104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한다.

⑭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22>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⑦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20716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민간투자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52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7, 2001.1.16, 2002.12.11, 2003.7.29, 2003.12.30,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5.31,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5.17, 2007.8.3, 2008.3.21>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러. 삭제 <2007.8.3>
  - 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버. 삭제 <2002.12.11>
  - 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저.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 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 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 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 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 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중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 코.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 토.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포.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  
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시설
  - 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 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 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 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가. 도로법
  - 나. 유료도로법
  - 다. 철도사업법
  - 라. 철도건설법
  - 마. 도시철도법
  - 바. 항만법
  - 사. 항공법
  -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차. 수도법
  - 카. 하수도법
  - 타. 하천법
  - 파. 「어촌·어항법」
  - 하. 폐기물관리법
  - 거. 전기통신기본법
  - 너. 전기통신사업법
  - 더. 전파법

- 러. 전원개발촉진법
  - 머. 도시가스사업법
  -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저. 삭제 <2007.8.3>
  - 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커. 「관광진흥법」
  - 터. 주차장법
  -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 로. 청소년기본법
  - 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 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소. 삭제 <2004.12.31>
  -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 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 토. 정보화촉진기본법
  - 포. 과학관육성법
  - 호. 초·중등교육법
  - 구. 고등교육법
  - 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두. 임대주택법
  - 루. 영유아보육법
  - 무. 노인복지법
  - 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수. 주택법
  - 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추. 산림법
  - 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14.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나.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
  - 라. 삭제 <2002.12.11>
  - 마. 중소기업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아. 삭제 <2007.8.3>
  -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999.2.8, 1999.9.7, 2001.1.16, 2002.12.11, 2003.7.29, 2003.12.30, 2004.12.31, 2005.1.27, 2005.3.31, 2005.5.31, 2005.8.4, 2006.9.27, 2007.4.6, 2007.4.11, 2007.5.17, 2007.8.3, 2008.3.21, 2008.3.28>

1.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 다.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 라.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 마.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설비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 러. 삭제 <2007.8.3>
- 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버. 삭제 <2002.12.11>
- 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어.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저.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 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
- 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 허.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 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 모.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
- 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 소.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 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초.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중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등 군인 또는 그 자녀의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 코.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 토.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포.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 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호.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보건의료시설
- 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 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 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 루.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 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  
 반시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4.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6.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8. "부대사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9. "사용료"라 함은 사용료·이용료·요금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당해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공공부문"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 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
  11.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법인(외국법인과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민관합동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민관합동법인"이라 함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13. "관계법률"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가. 도로법
    - 나. 유료도로법
    - 다. 철도사업법
    - 라. 철도건설법
    - 마. 도시철도법
    - 바. 항만법
    - 사. 항공법
    - 아.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차. 수도법  
 카. 하수도법  
 타. 하천법  
 파. 「어촌·어항법」  
 하. 폐기물관리법  
 거. 전기통신기본법  
 너. 전기통신사업법  
 더. 전파법  
 러. 전원개발촉진법  
 머. 도시가스사업법  
 버. 집단에너지사업법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 삭제 <2007.8.3>  
 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커. 「관광진흥법」  
 터. 주차장법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로. 청소년기본법  
 모.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소. 삭제 <2004.12.31>  
 오. 신항만건설촉진법  
 조.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토. 정보화촉진기본법  
 포. 과학관육성법  
 호. 초·중등교육법  
 구. 고등교육법  
 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두. 임대주택법  
 루. 영유아보육법

- 무. 노인복지법
  - 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 수. 주택법
  - 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추. 산림법
  - 쿠.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 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14. "다른 법률"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5. "국·공유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16.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 나.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
    - 라. 삭제 <2002.12.11>
    - 마. 중소기업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아. 삭제 <2007.8.3>
    -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 카.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7>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하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5.24, 2002.12.11, 2005.1.27, 2008.2.29>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의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의2. 제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24, 2002.12.11, 2005.1.27,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1999.5.24, 2008.2.29>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⑤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다음 연도중에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12.11, 2005.1.27>

1.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정책방향
2. 삭제 <2002.12.11>
3. 민간투자사업 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정책사항

② 삭제 <2002.12.11>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1.27>

1.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 부합할 것
2.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 것

②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실시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2002.12.11]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 투자방식(제4조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추진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1.27>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은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재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는 이미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제출마감일부터 6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①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1.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건설기간·예정지역 및 규모등에 관한 사항
2. 사용료·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3. 귀속시설여부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한)** 민간부문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당해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외의 다른 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기능별·시설별 또는 구간별로 분할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과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7>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토지에의 출입등)**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출입·일시사용·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제19조(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등)** ①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당해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내용이 공고된 날을 말한다)부터 당해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협의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공유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④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귀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 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20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 사업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전 또는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5.1.27, 2007.4.11, 2007.8.3>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 3의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8.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9.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시장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도매배송업 또는 공동집배송단지사업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11.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 등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

②사업시행자가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당해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1, 2002.12.11, 2002.12.30, 2003.5.29, 2007.4.11, 2007.8.3>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 3의2.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동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6. 「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8.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10.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 ④ 주무관청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에서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 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 ⑥ 사업시행자의 부대사업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⑦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7>

1.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총민간사업비(총사업비에서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일 것
2. 부대사업이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연관되고 당해 민간투자사업시행지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서 시행될 것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

**제22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가 제15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준공검사를 한 후,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① 대상사업의 검토, 사업타당성의 분석, 사업계획의 평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부설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1.27>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05.1.27>)**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5.1.27>

**제25조(시설사용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소유·수익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상사용기간 및 소유·수익기간의 산정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사용료징수기간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를 절감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용기간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개정 2005.1.27>)** ① 주무관청은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당해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등)** ① 관리운영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운영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권리의 변경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비치하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사용내용의 변경)** ① 주무관청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시설을 사용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차입한도 기타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2008.2.29>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제34조(보증대상 및 한도)** ①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급부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을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을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① 관리기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용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 관리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③ 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용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용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용자의 승인을 용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제36조(보증료)** ①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규모·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 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제37조(통지의무)**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금융기관, 외국금융기관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상당한 기간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제40조(구상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개정 2005.1.27>

**제41조(투융자회사의 설립목적 등)** ①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07.8.3>

③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 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 투융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07.8.3>

⑤ 이 법에 의한 투융자회사가 아닌 자는 투융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5.1.27]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3(발기설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4(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① 투융자회사는 운용자금이나 일시적인 투자목적 자금의 조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한도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다만,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 또는 사채발행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6(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금융위원회는 투융자회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투융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7(신주의 발행조건)** 투융자회사가 그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은 당해 투융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순자산액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8(주식의 상장)**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투융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제41조의9(투융자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투융자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투융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당해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투융자회사 및 당해 투융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본조신설 2005.1.27]

**제42조(경업제한)** 투융자회사는 자산을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것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① 투융자회사는 다음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취득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투융자회사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③투융자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전문개정 2005.1.27]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은 투융자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② 투융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제3장 감독

**제45조(감독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46조(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회기반시설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승인·확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1.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그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사회기반시설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당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2.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①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재고시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제출이 없는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대상사업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업에 대한 대상사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1조(보고·검사)** ①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공공부문이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관합동법인(설립예정인 민관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자할 경우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퍼센트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 공공부문은 제1항의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상법 제36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함에 있어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2. 제1호의 잡종재산에 부속된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90조에 규정된 것
3. 관리운영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관리운영권의 출자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성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5.1.27>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 대부를 할 수 있다.

**제54조(차관도입)** 사업시행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제55조(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당해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부담금등의 감면)** 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예정지역안에 있는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 또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2.12.30, 2005.7.21>

②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제57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개정 2005.1.27>)** ①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5.1.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등의 심의 및 책임감리)** ① 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귀속시설사업의 책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2.12.11]

**제61조(권한의 위임)** 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장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토지 또는 사회기반 시설을 사용한 자
- 1의2.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투융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의3.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 1의4.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에 위반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에 위반한 자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및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1의2. 제41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상장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624호,199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사업은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무관청이 대상사업으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후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이 법 시행전까지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이미 제출된 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을 적용하여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의 내용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사업은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거쳐야 한다.

제3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채권·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④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승인·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관광진흥법) <제5654호,1999.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서목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제21조 제3항제6호중 "제4조"를 "제14조"로, "제23조"를 "제50조"로, "제24조"를 "제52조"로, "제26조"를 "제55조"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농업·농촌기본법) <제5758호,1999.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 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5835호,1999.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생략

②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1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③ 내지 ⑥ 생략

#### 부칙(교통체계효율화법) <제5891호,1999.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기획예산위원회에"를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로 하고, 동조제6호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⑦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021호,1999.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 내지 ⑦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60호,2001.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생략

####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생략

<28>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6776호,2002.12.11>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 ② (기본설계도서 등의 자료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정하는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 ③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준공확인되는 귀속시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

####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개발자 지정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⑩ 내지 <14>생략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21>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955호,2003.7.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생략

②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③ 및 ④ 생략

**부칙(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7016호,200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 및 동조제13호 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철도사업법) <제7303호,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3호 다목중 "철도법"을 "철도사업법"으로 한다.

⑤ 내지 ⑧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철도건설법) <제7304호,200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 부칙 <제7386호,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정부는 이 법 시행 처음 연도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당해 연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투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 지원센터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투자관리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는 그 정관을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 투융자회사는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자산운용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은 당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변경된 때부터 3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② 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 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④ 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⑥ 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⑦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⑧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의3제3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 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 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⑫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로 한다.

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 환경개선비용부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 내지 ⑭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어촌·어항법) <제7571호,2005.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7604호,2005.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⑩ 내지 <19>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676호,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10호,2006.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 시설

제2조제13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⑥ 내지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중 "동조제14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 동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24>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 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관광진흥법) <제8343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서목 및 제13호커목 중 "관광진흥법"을 각각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를 "「관광진흥법」 제15조"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5조"를  
"제58조"로 한다.

⑩ 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누목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347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제2조제13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⑮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까지 생략

<18>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16호,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2조제13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저목을 삭제한다.

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제2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등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41조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의5제2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1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 투융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41조의9제1항 및 제2항 중 "자산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를 각각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7조제5항·제41조제2항제2호·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제46조·제53조제2항·제87조·제88조·제89조제2항 내지 제4항·제94조·제96조제2항 및 제177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83조, 제86조, 제183조,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94조제5항, 제196조제5항 후단, 제2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8조제7항"으로 한다.

<58>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9> 까지 생략

<7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33조제3항 전단·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65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8제2항 및 제41조의9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제2항, 제41조의9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4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 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9052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제2조제13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 카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제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

<개정 2003.2.24, 2005.3.8, 2005.6.23, 2008.2.29>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개정 1999.5.24, 2006.6.12, 2008.2.29>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 ⑧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2.24>
-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3.2.24>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개정 2005.3.8>

###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수립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변경(심의위원회가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5.24, 2008.2.29>

② 삭제 <2005.3.8>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6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개정 2003.2.24>)**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상사업"이라 함은 총사업비(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2007.12.28>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 민간부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내용
3.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기타 제안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1.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관청에서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거나 재정사업으로 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기본설계를 이미 시행 중인 경우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공투자관리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당해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검토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와 검토의뢰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12.28>

④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제안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가 미비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2005.3.8>

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의뢰를 받은 제안사업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2007.12.28>

⑥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성 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최초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5.3.8, 2008.2.29>

⑦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 당해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통지 예정일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8>

⑧ 주무관청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제안자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당해 제안내용의 개요를 관보와 30이상의 일간지 및 주무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적정 사업비·사용료·수익률 등 제반 사업추진을 위한 조건에 관하여 당해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내에 최초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3.8>

⑨ 주무관청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안서의 검토·평가지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8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⑪ 주무관청은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⑫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당해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0.12.30, 2005.3.8>

⑬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05.3.8>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8>

1.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미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1.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의 30퍼센트이내의 범위안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2. 기타 심의위원회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고시)**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요내용을 관보와 30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2(기본설계도서 등의 열람 대상사업)**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사업"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공사비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자로 하여금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3.8]

**제11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제안)** ① 민간부문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의 내용·사유 및 효과등을 기재한 제안서를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내용을 검토한 후 당해제안서의 채택여부등을 제안서 접수일부터 3월이내에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제안서의 채택여부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③ 주무관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채택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지 당해 사업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에 주무관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를 포함한다)
2.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3.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4.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5.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6.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7.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의 검토·평가)** ①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규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구성형태, 사업출자자와 사업시행자와의 관계등 사업시행자의 구성
2. 사업비의 규모, 건설기간, 건설입지, 건설의 내용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체자금 조달능력, 차입금 조달능력등 자금조달계획
4. 사용료, 사용량,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할인율, 부대사업의 규모등 사업의 경제성
5. 소요토지의 확보정도 및 확보계획의 타당성등 소요토지확보계획
6. 최저요구기술수준의 충족도 및 최신공법의 적용여부등 공사시의 적용기술
7. 시설의 보수계획의 적정성, 관리운영계획의 적정성등 시설의 관리능력
8. 시설이용자등에 대한 편익제공 정도등 사회적 편익에 대한 기여도
9.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관청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1항의 평가항목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사업계획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8>

④ 주무관청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7.12.28>

1. 총사업비가 2천억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1천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2. 삭제 <2007.12.28>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기간)** 법 제13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주무관청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내를 말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2.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3. 공정별 공사시행계획(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실시계획을 말한다)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5.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6.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3.2.24, 2005.3.8>

1. 위치도
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구별·단계별로 분할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할설계 도서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5.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6.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사용등에 관한 계획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에 관한 서류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0.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심의필증(「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1. 에너지사용계획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12.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때(사업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시행기간을 1년의 기간내에서 변경하는 때(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중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설비 및 시설의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 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준공확인)**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 이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0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개정 2005.3.8>)** ①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3.8>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3.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검토·평가, 실시협약체결등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4. 제7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대한 검토·평가
  5. 민간투자사업관련 인·허가등 신청업무의 대행
  6. 외국인 민간투자자를 위한 투자상담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 검토 및 타당성 분석
  8. 민간투자사업추진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및 관련분야 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 발굴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11. 기타 민간투자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 ②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제21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 등)** 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한국개발연구원장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매년 운영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조직·업무처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8]

###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05.3.8>

**제22조(총사업비등의 산정)** ① 법 제13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2.24, 2005.3.8, 2007.12.28>

1. 조사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비(「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2. 설계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에 의한다)
3. 공사비 : 공사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

4. 보상비 : 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및 제79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부대비 :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타당성분석비·환경영향평가비 및 감리비등의 제비용
  6. 운영설비비 :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최초로 투입하는 장비·설비 및 기자재의 가액
  7. 제세공과금 : 공사의 시행·준공·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등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8. 영업준비금:시설의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창업비·개업비 등 필수경비
- ②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중의 운영수익, 부대 사업을 통한 예상순이익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효과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③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경우외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0.12.30>
1. 건설기간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2.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제23조(사용료)**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총사업비·적정수익률·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등을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다.

<개정 2005.3.8>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서류를 사용료 징수개시 6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1. 사용방법 및 사용료율
2. 사용료의 산출기초자료
3. 사용료의 징수방법
4. 사용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6.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용료는 물가변동 기타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개정 2005.3.8>)** 법 제26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5.3.8>

**제25조(시설의 유지·관리)** ① 주무관청은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사용내용의 변경)**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공익상 현저한 필요가 있고 시설사용내용의 변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설사용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내용의 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내용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회수차질에 따른 손실
2. 기타 시설사용내용의 변경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손실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27조(관리기관의 업무처리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기준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28조(기금의 운용)** 법 제3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1999.5.24, 2003.2.24, 2005.3.8, 2008.2.29>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이나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4.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9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1천억원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천억원의 범위 이내에서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2003.2.24>

**제30조(보증료)**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이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5.3.8>

1.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6월이 경과한 때
  2.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보증받은 사업시행자가 기한내에 그 채권의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전문개정 2003.2.24]

**제32조(종된 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주된 채무의 이행기간이 도래한 후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된 채무의 약정기간중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액
2.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관리기관이 정하는 비용

**제33조(손해금)**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관리기관이 이행한 금액에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관리기관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개정 2005.3.8>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3.8]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①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및 단순한 자구수정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4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2. 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 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순자산액
5. 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6.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7.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자산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9.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10. 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11. 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3.8]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3.8]

**제34조의4(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보고)** ① 법 제4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회사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협회"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투융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회사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8]

**제34조의5(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4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을 말한다. 다만, 동 방법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투융자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8]

### 제3장 감독

**제35조(감독명령)**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46조 각호 및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1. 주무관청이 부실시공방지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의 편익을 현저히 저해할 정도로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장 보칙

**제36조(공공부문의 출자)**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공유재산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의 출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총출자 비율이 50퍼센트이상인 경우 또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등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1. 법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경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경우
3. 정관에서 정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8>

1.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관리권
2.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
3. 기타 관계법률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권

**제37조(재정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3.8>

1. 법인의 해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용지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됨으로써 민간자본유치가 어려운 경우

4. 실제운영수입(당해 시설의 수요량에 사용료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운영수입보다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5. 민간투자사업에 포함된 시설사업중 그 자체로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적으나 전체사업과 함께 시행됨으로써 현저한 공기단축이나 경비절감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조금의 교부 또는 장기대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당해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건설자금용 외화 차입금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및 제5장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방법 및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준용하여 당해 시설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제3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개정 2005.3.8>)**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8>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2003.2.24>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하 "사회기반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상법」 등 관련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되,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한 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5.3.8, 2008.2.29>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 귀속시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당해 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4. 기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을 입증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구당시의 사회기반시설(관련 운영설비를 포함한다), 부대사업시설 및 당해 사업의 영업권등의 적정가치를 고려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 제5장 벌칙

**제41조(과태료의 부과)** ① 주무관청,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7.12.31, 2008.2.29>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31>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부칙 <제16220호,1999.3.31>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7조, 제28조제3호, 제38조제3항 및 제41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 내지 <109>생략

**부칙 <제17093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7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18>내지 <3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928호,2003.2.24>**

이 영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6호,2005.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시계획승인신청시 승인여부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한 민간투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각각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자본시설운영업무"를 "사회기반 시설운영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운영업무"를 각각 "사회 기반시설운영업무"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사회간접 자본시설운영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영업무"로 하며, 동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 운영업무"를 "사회기반시설운영업무"로 한다.

제77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③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⑦ 기획예산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⑧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동항제2호 나목 및 제17조의5제2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⑩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64조제6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⑪ 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⑫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 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⑮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16>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 마목 및 제129조제6항제8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7>증권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19>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3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20>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관리운영권"을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한다.

<2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2>한국도로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3>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5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5조의7제5호 가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4>항만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5>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26>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27>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투자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여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⑬ 내지 <35>생략

####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15>생략

<116>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17>내지 <241>생략

#### **부칙 <제20490호,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반려 및 적격성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안되는 민간부문 제안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여성가족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과학기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예산처"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7조제6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21조제3항·제4항, 제27조, 제28조제3호·제4호,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1> 부터 <68> 까지 생략

## ◆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

개정 2005.4.11 조례 제34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경기도제1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경기도제2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행정(1)부지사 관할 하에 제1위원회를, 행정(2)부지사 관할 하에 제2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하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위원회와 제2위원회에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05.4.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위원회 및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가 되고, 각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관할별 민간투자사업 담당 실. 국장이 된다.

④ 각 위원회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제1위원회 : 투자진흥관.문화관광국장.농정국장.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건설국장.도시주택국장.가족여성정책국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인

<개정 2006.9.19>

2. 제2위원회 : 행정(2)부지사 관할 실.국장 및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인  
<개정 2005.4.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각 관할별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실.과장이 된다. <개정 99.9.20> <개정 2005.4.1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각 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5.4.11>

②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별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신설 2005.4.11]

**제9조(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1999·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및정원조례) <제3556호,2006·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생략

⑪ 「경기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건강국장,건설국장"으로 한다.

⑫~(28) 생략

# 관계법령 문의처

법령명	담당부서		
	담당	담당자	전화
지방자치법령	재정총괄담당	이진경	249-2407
지방재정법령	재정총괄담당	이진경	249-240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	재정총괄담당	장태일	249-240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령	투자심사담당	이기택	249-2836
복권 및 복권기금법령	투자심사담당	천문기	249-2854
지방공기업법령	공공기관관리담당	강현일	249-240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공공기관관리담당	강현일	249-2409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재정총괄담당	이진경	249-2407
경기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재정총괄담당	이진경	249-2407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재정총괄담당	이진경	249-2407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재정총괄담당	장태일	249-2405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	투자심사담당	이기택	249-2836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투자심사담당	이윤표	249-2403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투자심사담당	천문기	249-2854
경기도 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조례	투자심사담당	천문기	249-2854
경기도 지방공기업 적용대상기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공공기관관리담당	강현일	249-2409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공공기관관리담당	강현일	249-2409
경기도 산하단체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칙	공공기관관리담당	박영선	249-2404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공공기관관리담당	강현일	249-2409

※ 법령에 대한 문의사항을 경기도 재정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

## 지방재정 관련법령 모음집

---

**발행일 : 2008년 7월**

**발행처 : 경기도 재정담당관실**

**기획·편집 : 경기도 재정담당관실**

재정담당관	임 봉 재
재정총괄담당	김 평 원
투자심사담당	김 기 상
공공기관관리담당	이 성 호

---

본 책자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재정담당관실(☎ 249-2407, FAX 249-2462)로 연락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